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 개요

- 01. 의무교육 6개년 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건
- 02. 교육공무원법
- 03.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 04. 지방교육교부세법
- 05.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제15회)
- 0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 07. 과학교육진흥법
- 08. 학교보건법
- 09.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관한 건(중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제59회)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제75회)
- 11.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시안)
- 12. 입시제도 개선 최종방안 확정(고교 및 대학)
- 13. 공업고등학교 중점육성계획 보고
- 14.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안)
- 15. 학교급식법(제971호)
- 16.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제49호)
- 17. 교육공무원법 위헌결정 관련 교사신규임용 종합대책
- 18. 지방교육양여금법
-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
- 20.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4376호)
- 2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 22. 교육정보화촉진 시행계획(안)
- 23. 초·중등교육법(제5438호)
- 24.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보고
- 2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초·중등교육 개요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은 보통교육, 기초교육이라 할 수 있는 초등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등교육이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완전 취학을 달성했고, 높은 진학률을 기록하였다. 학교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여 기반을 다지면서 상위 단계인 중등교육의 기반을 조성해 갔고, 양적 확대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질적 성장이 뒤를 이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초·중등교육 정책에서 특징적인 주제를 의무교육체제의 확립, 중등교육의 확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원과 환경 조성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실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의무교육체제의 확립

정부수립 이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은 「헌법」과 「교육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의 추진이었다. 「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하였고, 「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1950년 6월 1일을 기하여 6개년 간의 의무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좌절되었고, 1952년 6월 교육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무교육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1954년부터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은 1959년까지 학령 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끌어올리고 부족한 교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학 아동 수는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학교와 시설의 확충은 미흡하였다. 「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년당 6학급 이하, 학급당 수용인원 60명 이하는 실현할 수 없었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은 단기간에 높은 취학률을 기록하여 초등교육의 양적 성장에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표 1】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 상황

연도	학령아동 취학률(%)		교실 건축(실)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954	88.8	82.5	5,924	457
1955	91.8	89.5	5,929	7,062
1956	93.5	89.5	6,569	—
1957	95.8	91.1	6,269	2,923
1958	96.0	92.5	6,051	3,758
1959	96.1	96.4	5,654	2,840

* 출처 : 문교부, 『문교40년사』, 1988, 152~153쪽

1960년대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호응하여 두 차례에 걸친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1962~1966년, 1967~1971년)을 수립·추진하였다. 그 결과 학교 증설과 교실 신축은 당초 목적보다 초과 달성하였고, 재정에 대한 총 투자액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의무교육 재원의 확보를 위해 1958년에 제정한 「교육세법」과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영향이 컸다. 목표 연도인 1971년에는 부족한 교실 문제를 거의 해소할 수 있었고, 대도시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2부제 수업을 폐지할 수 있었다.

1967년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도서와 벽지지역의 의무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71년에는 의무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중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면서 교부금제도의 일원화를 가져오고 신축성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완성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4년 8월 2일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1987년에 도서·벽지지역, 1992~1994년에 읍·면지역까지 혜택이 돌아갔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

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다. 이후 2001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가 결정되었고,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에는 중학교 3학년 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의무교육의 대상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확대되고 2004년 전체 중학교로 무상 의무교육이 실현되자 최근에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쟁점이 되고 있다.

2. 중등교육의 확대

1950년대에 초등 의무교육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자 그 다음 단계인 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진학률의 증가로 중등교육의 규모 또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팽창하는 중등교육의 재원 확보와 배분을 위하여 1958년에는 「지방교육교부세법」이 도입되었고, 1965년에는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매년 증가하는 중·고등학교 학령인구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학교확충을 계획하여 중등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순차적 확충, 지방교육과 실업 고등학교 육성, 사학을 통한 확충 증가를 내용으로 하였으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초등교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중등교육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1960년대 후반에는 중학교 입시에 큰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초등학생의 과열과외 해소와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1968년에 추첨 배정 방식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입시 경쟁의 시점이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로 연장된 것이었고, 과거 중학교 입시와 동일한 문제점이 고교 입시에서 또 다시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고교 입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1973년에 추첨 배정 방식의 고교 평준화제도가 도입되어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평준화 확대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는 인문 고교도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치열한 고교 입시는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중학교 교육 정상화와 과열과외 감소, 고등학교 서열화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공·사립학교 간에 교원, 시설, 학생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다. 학교시설을 평가하여 부실학교를 정리하고, 공

립학교에서 교원의 순환전보제를 실시하며, 사립 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학교의 질적 평준화를 도모하였고,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업교육, 기술교육의 강화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도 정책적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가 중화학 공업과 기계 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 기술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 1973년부터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실험실습비, 시설비 등을 집중 지원하였다. 1974년에는 공업고등학교와 공업계 전문학교의 특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의 64개 공업고등학교와 15개 공업전문학교를 기계, 전자, 조선, 화공 등 분야별 특수 공업고등학교나 전문학교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75년에는 정밀가공사 양성 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집중지원을 위해 ‘공업고등학교 중점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990년과 2000년을 비교하면 중학생은 2,275,751명에서 1,860,539명으로, 고등학생은 2,283,806명에서 2,071,46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중학교는 2,474개교에서 2,731개교로, 고등학교는 1,683개교에서 1,975개교로 오히려 늘어났다. 학령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줄고 있으나 교육 여건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표 2】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수의 변화 추이

연도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1990	유	8,354	14,473	414,532	18,511
	초	6,335	117,538	4,868,520	136,800
	중	2,474	45,310	2,275,751	89,719
	고	1,683	43,233	2,283,806	92,683
	계	18,846	220,554	9,842,609	337,713
2000	유	8,494	20,723	545,263	28,012
	초	5,267	112,437	4,019,991	140,000
	중	2,731	48,946	1,860,539	92,589
	고	1,957	47,895	2,071,468	104,351
	계	18,449	230,001	8,497,261	364,952

【표 2】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수의 변화 추이(계속)

연도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2010	유	8,388	25,670	538,587	36,461
	초	5,854	123,933	3,299,094	176,754
	중	3,130	58,373	1,974,798	108,781
	고	2,253	58,172	1,962,356	126,423
	계	19,625	266,148	7,774,835	448,419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90·2000·2010

3.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구체적으로 교과목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공포)는 1997년까지 일곱 차례 이루어졌다. 1952년에 교과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954년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을 문교부령으로 공포하였고, 1995년에 각급학교의 교과별 교육과정을 제정·공포하였다. 1954~1955년 1차 교육과정(교과중심 교육과정), 1963년 2차 교육과정(경험중심 교육과정), 1973~1974년 3차 교육과정(학문중심 교육과정)은 각각 교육과정의 사조를 반영하였고, 1981년 4차 교육과정, 1987~1988년 5차 교육과정, 1992년 6차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공포되었다.

1997년에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5.31 교육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학생중심선택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더이상 전면적, 일률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교과서에 관한 규정도 마련·정비되었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국정교과용도서 편찬규정」과 1950년에 제정된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이 1973년 「교과용도서 저작권인정령」으로 통합되었고, 이 법령을 폐지하

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교과서의 범위에 음반, 영상, 저작물이 포함되는 등 시대상황을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7년에는 「과학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과학교육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1967년 4월에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이 신설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보조를 같이 하여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 계획(1967~1971년)이 수립되면서 관련 법률로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교육계에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였으나, 학교폭력이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1월 27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부터로 볼 수 있다. 1996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이 교육부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1997년에는 광복 후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교육법」을 폐지하면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근간을 규정한 법률이 「초·중등교육법」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법률체계 개선과 함께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입법적 보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 교원과 환경 조성

학교교육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은 교원이다. 1953년에 「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종류, 자격, 임명, 복무, 연수, 신분보장, 징계 등 교원 인사의 전반적인 틀을 규정하였다.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학문연구의 자유, 신분보장, 처우개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을 쇄신·진흥시키고자 하였다.

1990년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임용은 국립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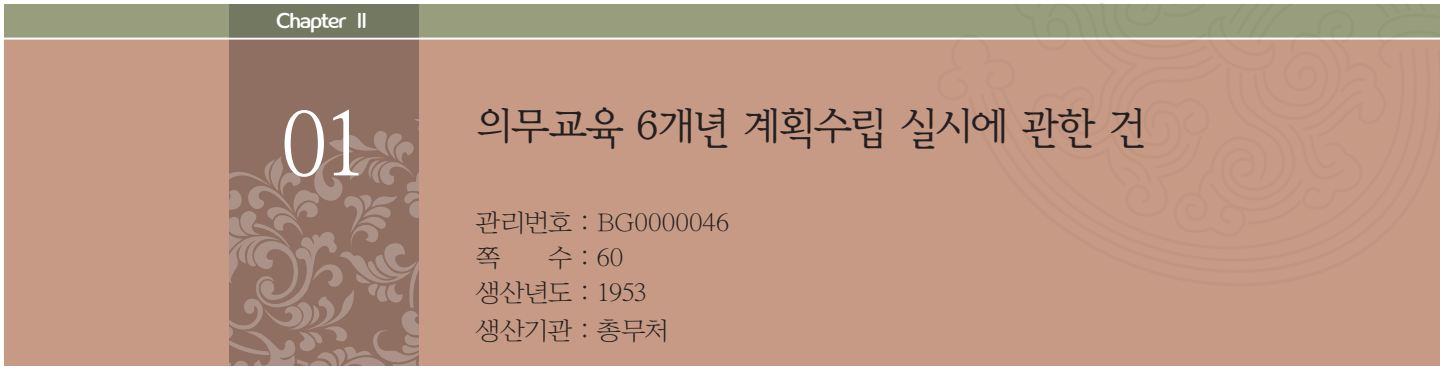
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의 의무임용이 원칙이었던 것이 1991학년도부터 공개전형에 의한 교원 신규임용제도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섭·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원의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규율하였다. 1989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교사들이 파면·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1994년 해직교사가 복직 조치 되면서 1998년에는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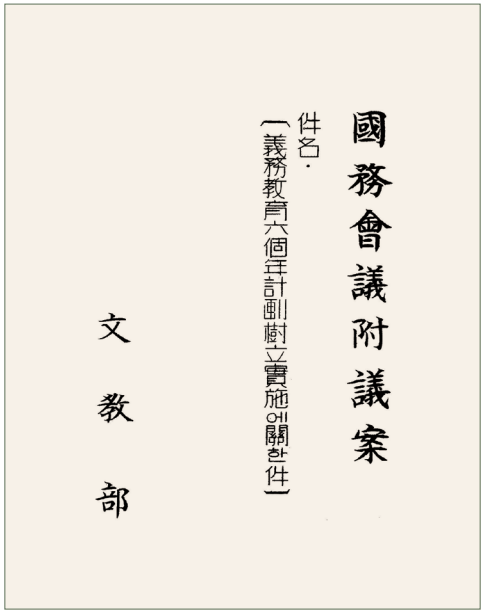
학교교육의 행정적 체계와 관계된 중요한 법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에 제정되었다. 「교육법」에 근거했던 지방교육자치의 근거 조항을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였고, 제3, 4공화국 시대 명목상의 교육자치를 끝내고 실질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지방교육자치제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보건법」(1967년)이, 학교급식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법」(1981년)이 제정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1990년대에는 교육에서 정보화가 중요하게 부상하였다.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세계화, 정보화가 주요 화두가 되었고, 5.31 교육개혁(안)에서도 정보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자 교육 분야의 계획으로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1996~2000년)이 수립되었다. 기존의 ‘학교 컴퓨터 교육’이 ‘교육정보화’로의 종합적인 비전과 과제를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다.



문교부가 작성한 국무회의부의안으로 건명은 〈의무교육 6개년 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건〉이다. 이 자료는 의무교육 6개년 계획 실시요령, 의무교육 6개년 계획 총괄표, 표1(의무교육 6개년 계획에 의한 학령, 적령아동취학 목록표), 표2(의무교육 6개년 계획 각 연차별 총괄표), 표3(의무교육 6개년 계획 각 연차별 의무교육비 소요액 총괄표), 표4(의무교육 6개년 계획 각 연차별 의무교육비 재원부담예정액 총괄표), 표5(의무교육 6개년 계획 교육위원회 및 교육구 자체수입예정액 총괄표)로 이루어졌다. 1954년부터 추진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1】 〈의무교육 6개년 계획수립 실시에 관한 건〉 표지 (BG0000046, 18쪽)

한국의 의무교육은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한다”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학령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그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문교부는 의무교육 추진을 위한 6개년 계획을 세우고

1950년 6월 1일에 이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그 시행이 지연되었고, 1952년에 「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고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자료의 ‘의무교육 6개년 계획 실시요령’에서 의무교육제는 1950년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나 6.25전쟁 이후 제반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여 학령아동 완전취학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미취학아동 수용과 적령아동 완전취학을 기할 계획으로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교육 완성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아동의 취학률을 96%로 끌어 올리는 것으로, 교실의 확보와 재정적 필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연차별 계획과 목표 수치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취학률과 학교수, 학년별 학급수와 학생수, 학급·학생·교원·교실의 증가수, 교원 봉급, 사무노무직원 인건비, 재원부담, 세입예정액 등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의무교육 6개년 계획 총괄표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의 목표

연도	학령 아동 취학 목표			학교 증설수	학급 증가수	학생 증가수	교원 증가수	사무직원 증가수	교실 증축수
	아동수 (추정)	취학 아동수 (계획)	취학률 (%)						
제1차년도 (1954)	3,071,640	2,728,903	88.84		2,352	318,645	9,521	676	5,924
제2차년도 (1955)	3,107,762	2,851,740	91.76	88	2,361	123,837	2,549	285	5,929
제3차년도 (1956)	3,221,508	3,011,313	93.47	54	3,001	159,573	3,268	275	6,569
제4차년도 (1957)	3,393,503	3,252,334	95.84	54	2,701	241,621	2,987	303	6,269
제5차년도 (1958)	3,412,924	3,276,553	96.00	61	2,483	24,219	2,764	326	6,051
제6차년도 (1959)	3,459,412	3,325,803	96.13	44	1,121	49,250	1,336	762	5,644

* 출처 : BG0000046, 23쪽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이 목표로 한 취학률은 목표 연도인 6년차에 달성되었다. 1차 연도인 1954년에는 3,246,364명의 학령아동 중에서 2,678,978명이 취학하여, 취학률이 82.5% 수준이었다. 목표 연도인 1959년에는 3,799,690명의 학령아동 중에서 3,558,142명이 취학하여, 취학률이 96.4%로 상승되었다. 취학 아동수의 급격한 증가로 교실의 부족과 교원수급의 차질이 있었는데, 교실은 6년 간 36,396실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실제 17,040실을 건축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학급당 60명 이하로 수용하도록 한 「교육법시행령」의 규정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6년제 초등교육의 완전취학을 단기간에 달성하였다는 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1950년대에 가장 중점을 둔 교육정책은 초등 의무교육을 확립하는 정책이었고, 양적인 규모 면에서 목표를 이루었고 이후 의무교육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후 1958년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한 재원 마련, 두 차례에 걸친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1962~1966년, 1967~1971년)을 통한 환경 개선 등이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은 완성되었으나, 이를 확대하는 과제가 부상하였고, 2000년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시행에 이어 현재 고등학교 의무교육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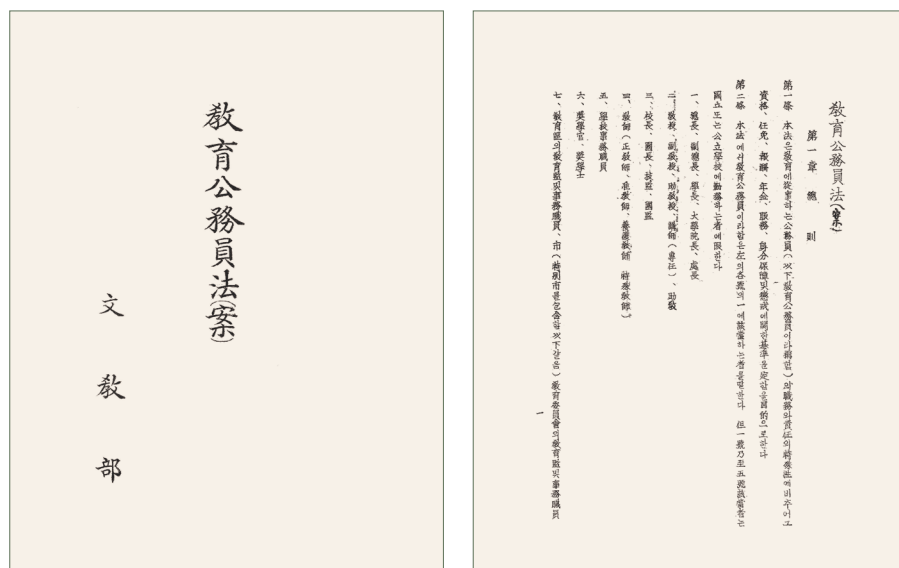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4532000

쪽 수 : 55

생산년도 : 1953

생산기관 : 법제처

「교육공무원법」은 법률 제285호로 1953년 4월 18일에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1953년 4월 20일에 법제처장이 대통령비서실에 ‘교육공무원법 공포의 건’을 발송하는 글, 대통령이 4월 18일 공포한다는 글,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4월 4일 법안 발송하는 글, 법안, 심의경과표로 이루어졌다. 법안은 수정된 부분이 많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2】〈교육공무원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2000, 4,905쪽, 4,906쪽)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종류, 자격, 임명, 복무, 연수, 신분보장, 징계 등 교원 인사의 전반적인 틀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이유는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면, 보수, 복무, 신분보장과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문연구의 자유, 신분보장, 처우개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등

시에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을 쇄신·진흥시키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9장(총칙, 자격과 자격증, 임명, 보수, 복무와 연수, 신분보장, 징계, 벌칙, 부칙) 전문 47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①교육공무원을 국·공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에 규정한 교원, 교육감·장학관·장학사 및 국·공립학교 또는 교육구·시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함, ②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고, 교사는 정교사·준교사·특수교사 및 양호교사로 나누어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문교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함, ③총장·부총장·학장은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교수·부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④총장의 임기는 6년, 부총장·학장·대학원장·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될 수 있도록 함, ⑤교육공무원은 그 보수에 있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우대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보건수당, 근속수당을 규정하며 임신 중의 여자교원은 3개월 이내의 휴가를 주고 조산비를 지급하도록 함, ⑥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함, ⑦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함, ⑧징계의 종류를 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함 등이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의 수당 신설을 규정함에 따라 1954년에 「교육공무원보수 규정」이 제정되었다. 초·중·고·초대·대학 교원별로 5원화된 봉급 체계를 단일체제로 바꾸면서 대학 교원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초·중등교원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인상되었다.

「교육공무원법」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처우를 우대하는 등 우수한 국공립학교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또한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 교원과 관리자도 준용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와 신분보장에 기여하였다. 1998년 대학교수를 제외한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감축되었고, 2011년 수석교사제도가 신설되는 등 부분적인 변화는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을 통한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관리번호 : 1A00614174532356

쪽 수 : 33

생산년도 : 1958

생산기관 : 법제처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법률 제514호로 1958년 12월 29일 제정되고 195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1971년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자료는 1958년 12월 28일 법제실장이 공보실장, 장관, 수석국무위원에게 발송하는 법률공포에 관한 건으로, 12월 26일 국회에서 이송되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의결하였으며, 원 법령명이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이었으나 ‘평형’을 삭제한 표기가 남아있다.



【그림 3】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1A00614174532356, 13,145쪽, 13,146쪽)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54년부터 추진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의무교육재원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교육세법」과 함께 1958년에 제정되었고, 교육재

정에 있어서 교부금 제도 도입의 효시가 되었다.

제정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무상원칙의 의무교육 완수를 위하여 교육법은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는 부족액을 국고에서 전액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부족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수시로 부당한 감액 또는 삭감을 당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구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의 산출기준을 법령으로써 규정하여 확실성 있는 재정부족액을 파악케 하고 이에 균형 있는 국고보조를 시행함으로써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이전까지 실시했던 환부금 제도는 지방에서 징수한 세수의 일부를 그대로 환부하는 것이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어려웠지만, 교부금 제도를 통해 의무교육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육재정의 균등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법률은 전문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교육구의 의무교육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의무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교육구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법정하고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전국의 의무교육총재정부족액과 특별한 의무교육재정수요액을 매년 정부예산에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으로서 계상토록 함, ②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2종으로 하고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에 이 법에 의하여 산정된 그 재정부족액을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에 교부토록 함, ③교부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되 그 한도액은 당해 연도의 예산액의 4분의 1씩으로 함 등이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등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교부세법」과 함께 교부금 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재원을 소득세와 입장세에 의존하여 실제 교부액과 차질을 빚어 1962년 크게 개정되었고, 1968년에는 내국세 총액의 11.55%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내국세 징수에 따른 차액을 다음 연도에 추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교부금 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폐지되었다.

지방교육교부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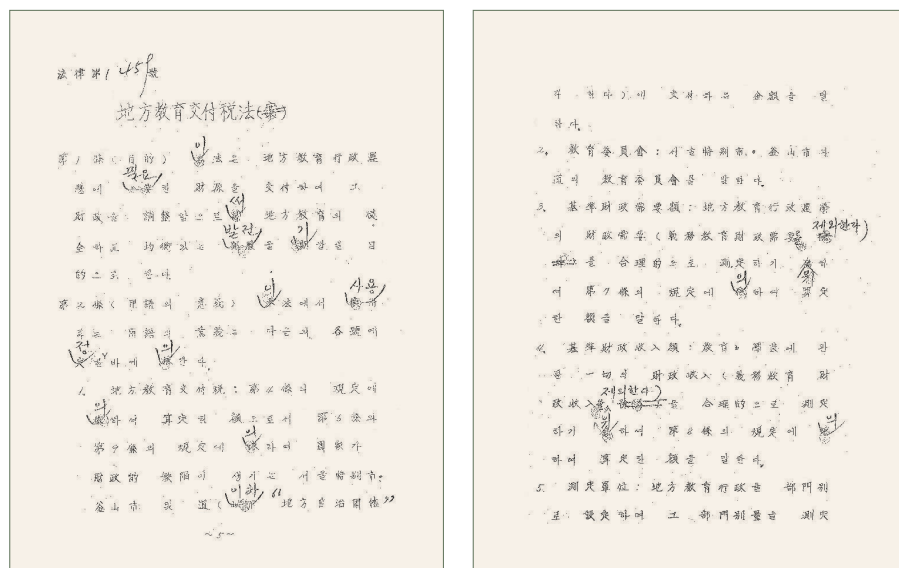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5008984

쪽 수 : 24

생산년도 : 1963

생산기관 : 법제처

「지방교육교부세법」은 법률 제1459호로 1963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6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1963년 12월 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결장으로부터 이송된 법률을 12월 3일 각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되어 12월 5일 공포한다는 결재를 요청하는 글, 법률, 공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로 구성되었다.



【그림 4】〈지방교육교부세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5008984, 14,025쪽, 14,026쪽)

「지방교육교부세법」은 1958년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어 두 번째 도입된 교부금 제도에 관한 법률로, 팽창하는 중등교육에 대한 자원 확보와 배분을 위하여 도입·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중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오던 중·고등학교 교직원봉급의 전입금 해당액을 새로이 설치된 교육위원회의 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입금으로 부담되어 온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에서 삭감하고 이를 직접 국가에서 교부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그 전까지는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은 국고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반액은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였으나 지방재정 형편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없게 되자 나머지 반액도 국고에서 내무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속에 포함시켜 지원하였다. 그러나 교부금에 계상되는 나머지 반액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마저도 제대로 전입되지 못하는 폐단이 계속되자 이를 국가에서 직접 교부하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법률은 전문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지방교육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지방교육행정 운영의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측정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교부세를 교부하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교부하도록 함, ②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측정에서는 의무교육재정수입이나 수요를 제외한 모든 지방교육 운영에 수반된 수입과 수요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함, ③지방교육교부세 재원은 매 연도의 입장세액의 100분의 40과 주세 중 탁주, 약주세의 세액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매 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④지방교육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위원회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수입예산액으로 하되,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한 것으로 하며, 기준재정수요액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함 등이다.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의무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함께 교부금 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환부금 제도와 병행하였고, 교부금을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국고보조금과 비슷하여 명실상부한 교부금 제도는 되지 못했다. 1971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교부금 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교육교부세법」은 폐지되었다.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제1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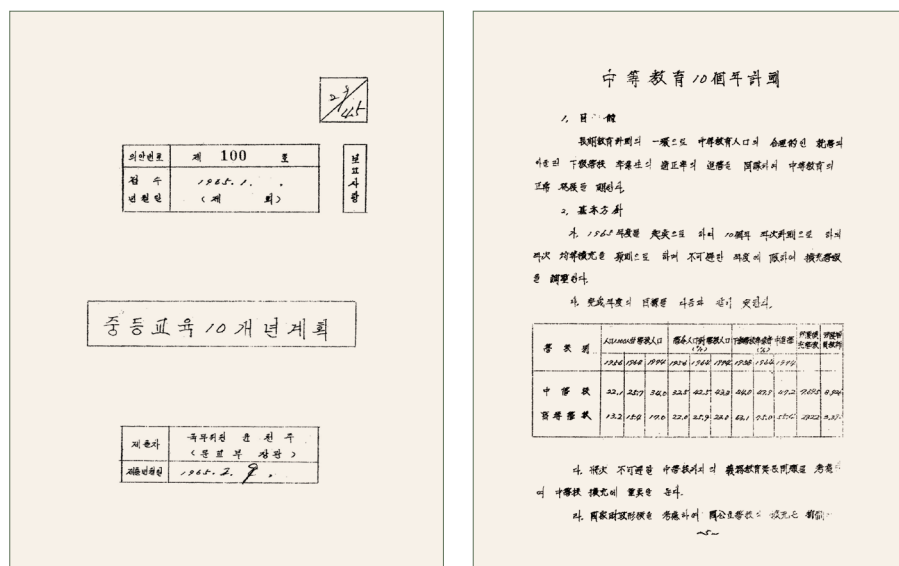
관리번호 : BG0000446

쪽 수 : 19

생산년도 : 1965

생산기관 : 총무처

문교부에서 1965년 2월 9일 발송한 국무회의 안건이다. 이 자료는 문교부의 국무회의 안건 제출문과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은 문교부가 1965년 1월에 제출한 것으로 작성되었고, 보고문, 중등교육 10개년 계획, 과거의 학교인구 실태(표), 참고사항으로 중·고등학교 확충계획상 고려점, 학제와 수용능력을 현상대로 유지하는 경우 10년 후의 동태(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중등교육 10개년 계획(제15회)〉 표지 및 내용 (BG0000446, 188쪽, 193쪽)

1954년부터 시작된 의무교육 6개년 계획과 1962년부터 추진된 의무교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 등 초등교육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자, 그 다음 단계인 중등교육으로 정책적 관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이에 1965년에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

어 그 해부터 10년 간의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계획의 보고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중·고등학교 학령인구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학교확충을 계획·실시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 밝혔다.

중요 골자로 제시한 내용은 첫째, 계획의 목적은 중등학교의 학생 수용을 경제적 사회적 여건 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등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둘째, 계획의 기본방침은 ①1965년도를 기점으로 10년 간의 연차계획 하에 수용능력을 적정조정하되 학제개편 또는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정함, ②계획의 기본 목표는 중·고등학교 학생 정원을 인구 1,000명당 51명(중학교 학생 정원은 1,000명당 34명, 고등학교 학생 정원은 1,000명당 17명)으로 함, ③기본목표 실현을 위하여 적정진학률 및 10년 간 연평균 학교 증설수를 정함, ④학교의 확충은 사립학교에 중점 실시하며 실업계는 인문계에 우선함 등이다. 셋째, 재정은 사립학교에 중점 실시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한 국가예산시책에 따라 국고의 재정적 부담을 가급적 억제함 등이다.

이 자료에서 제시한 중등교육인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4】중등교육인구 목표

학교	인구 천명당 학교인구			학령인구 대 학교인구(%)			하급학교 졸업자 중 진학(%)		
	1956	1964	1974	1956	1964	1974	1956	1964	1974
중학교	22.1	25.7	34.0	32.5	42.5	43.3	44.0	49.9	47.2
고등학교	13.2	15.4	17.0	22.0	25.9	23.0	63.1	75.0	55.4

* 출처 : BG0000446, 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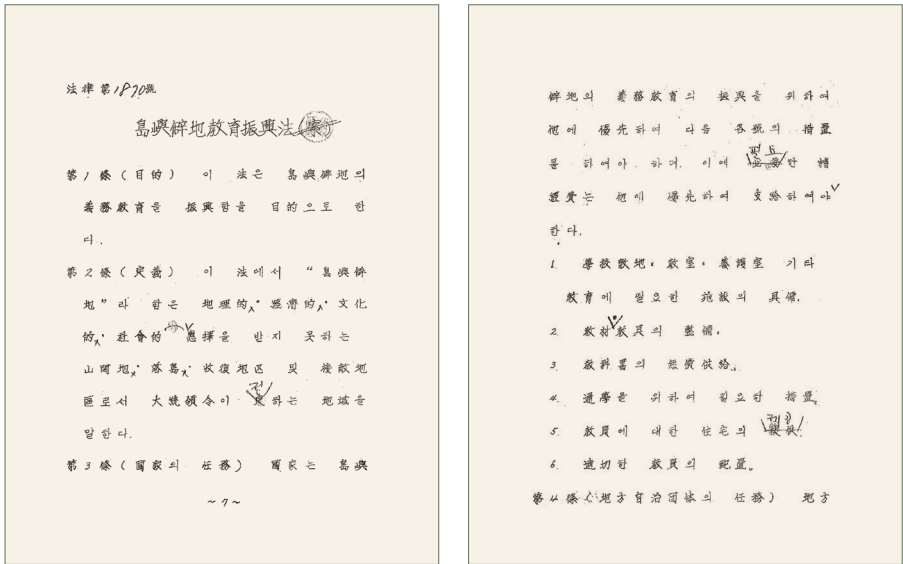
계획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취학률, 진학률 등을 통해 중등교육 전망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 계획 면에서 볼 때 중등교육인구는 10년 후에 719,000명 이상의 증가는 곤란하고, 취학률과 진학률로 볼 때 328,000~995,000명으로 산출되며, 외국의 예로 볼 때 1,106,000~2,425,000명의 증가가 전망되었다. 적어도 중학교의 진학률은 저하시킬 수 없고, 중등교육을 위한 정부투자 증액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립에 중점을 두어 확충 증가를 기도하며, 당시 중·고등학교의 분포로 보아 지방교육 육성,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실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은 초등교육에서 중학교 교육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양적인 확대 계획 속에서 정부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확충을 통해 수용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중등교육 10개년 계획〉이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계획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사실상 자원 소요가 없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에 그쳤을 수도 있다. 중등교육의 진학을 제고는 오히려 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지만, 1960년대 중등교육의 기회 확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Chapter II		
0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관리번호 : 1A00614175009640	
	쪽 수 : 9	
	생산년도 : 1967	
	생산기관 : 법제처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법률 제1870호로 1967년 1월 16일 제정되어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이 자료는 1967년 1월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을 1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고자 결재를 요청하는 글, 1월 16일에 공포하는 글, 법률,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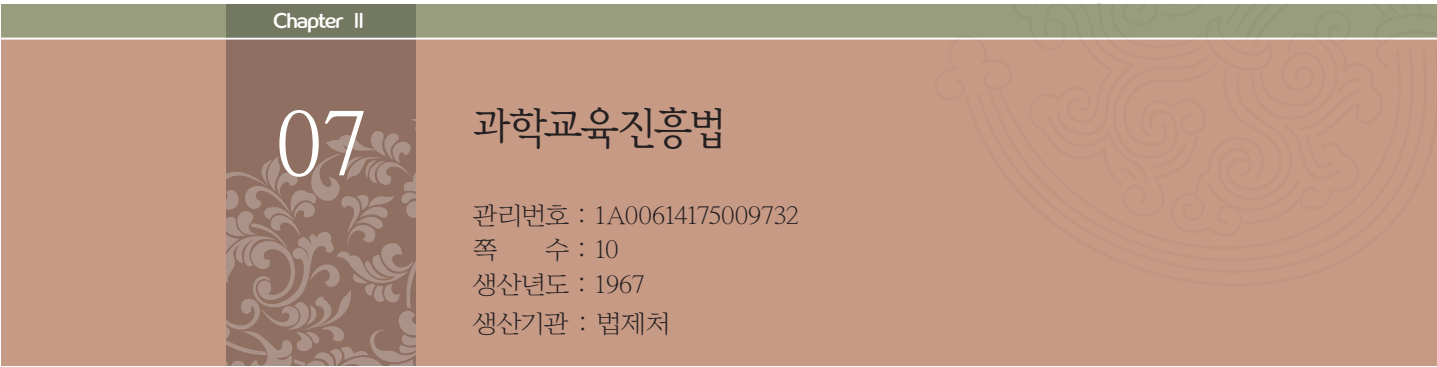
【그림 6】〈도서벽지교육진흥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5009640, 26,454쪽, 26,455쪽)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도서와 벽지 지역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다. 도서벽지는 교육시설의 미비, 주민의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 실조, 생활 조건의 불비, 복식 수업의 어려움, 교원에 대한 보수와 인사상의 우대책 결여 등으로 인한 교원들의 부임 기피 현상, 아동의 학력 저조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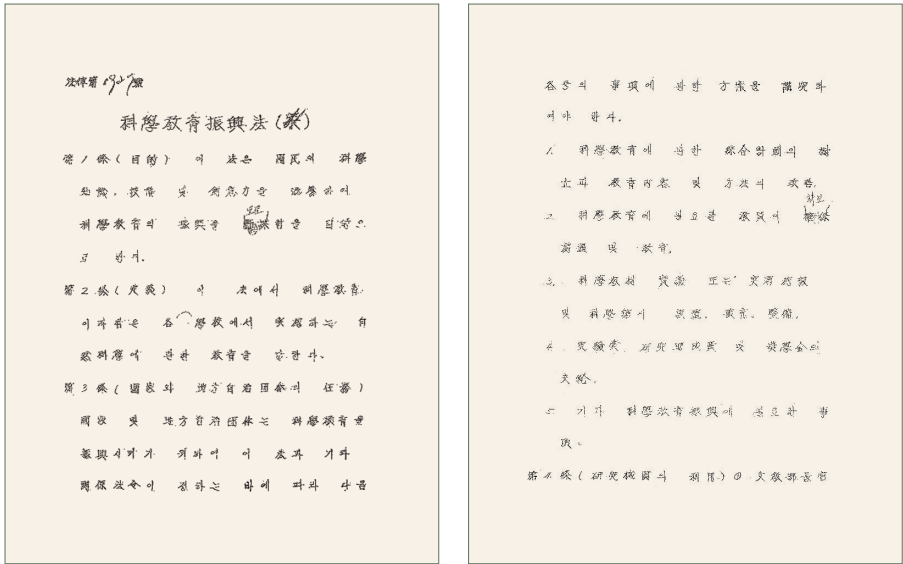
제정 이유는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낙도·수복지구 및 접적지구인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6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밝혔고, 제2조에서 도서벽지는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낙도·수복지구 및 접적지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벽지 의무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로 ①학교부지, 교실, 양호실,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②교재, 교구의 정비, ③교과서의 무상 공급, ④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교원에 대한 주택의 공급, ⑥적절한 교원의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도서벽지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 자료의 정비, ②교원의 연구 기회의 우선 부여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급지별로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1967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되어 대상지역과 급지를 구분하고 도서벽지수당지급액을 규정하였다. 1982년에는 법률명이 「도서·벽지교육진흥법」로 되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으로 도서·벽지의 급지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광산지구가 새롭게 도서·벽지로 규정되었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복지를 위한 법률로 유지되고 있다.



「과학교육진흥법」은 법률 제1927호로 1967년 3월 30일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1967년 3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을 3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고자 결재를 요청하는 글, 3월 30일에 공포하는 글,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로 구성되었다.



【그림 7】〈과학교육진흥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5009732, 28,135쪽, 28,136쪽)

「과학교육진흥법」은 1967년 4월에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이 신설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보조를 같이 하여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 계획(1967~1971년)이 수립되면서 법률로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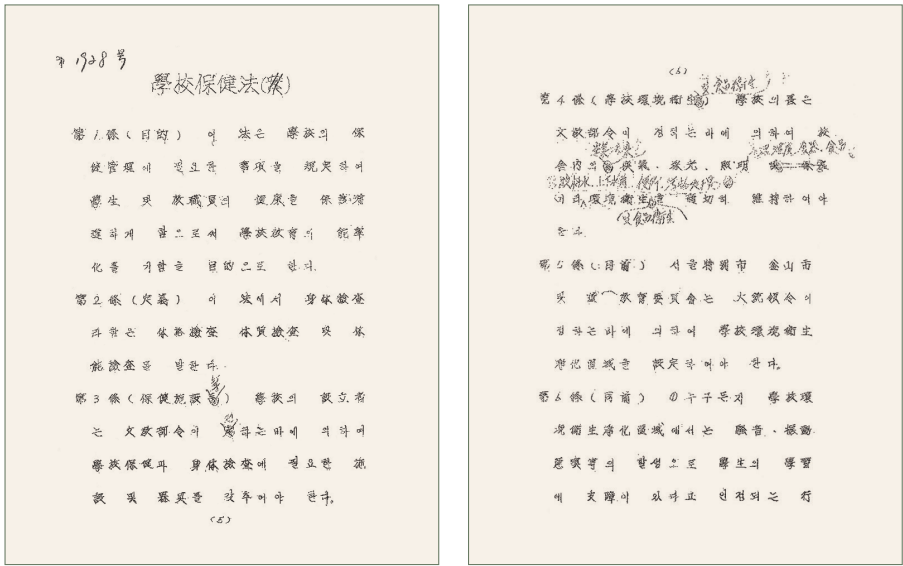
제정 이유는 “각급학교의 과학교육과정이 과학교육목표에 알맞게 편성되어 있지 못하며 과학담당교원은 수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저조하며, 과학교재는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치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실험비는 소요액에 태반이 부족한 실정인바 이를 혁신하여 실질적인 과학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과학지식·기능 및 창의력을 함양하여 과학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고, 제2조에서 과학교육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 법과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교육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②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 장관 소속 하에 과학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③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과 외국기관의 원조금 및 일반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과학교육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함, ④국가는 과학교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등이다.

법률의 제정 이후로 과학교육은 강화·확대되었는데, 1968년부터 과학교사의 재교육, 과학교육시범학교의 설치·운영, 과학교육과정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고, ‘과학기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이 함께 강화 추진되었다. 2016년 일부개정된 「과학교육진흥법」의 목적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과학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이며, 과학교육은 과학교육기관(학교, 대학, 교육연수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으로 정의되어 구체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교육진흥법」은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법률로 유지되고 있다.

Chapter II	08	학교보건법
관리번호 : 1A00614175009733		
쪽 수 : 13		
생산년도 : 1967		
생산기관 : 법제처		

「학교보건법」은 법률 제1928호로 1967년 3월 30일 제정되어 6월 29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1967년 3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을 3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고자 결재를 요청하는 글, 3월 30일에 공포하는 글,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로 구성되었다.



【그림 8】〈학교보건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5009733, 28,145쪽, 28,146쪽)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밝혔고, 제2조에서 신체검사는 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능검사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학교의 설립자는 학교보건과 신체검사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함, ②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게 함, ③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매년 실시하며,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행하도록 함, ④감독청은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당해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두도록 함 등이다.

「학교보건법」의 제정에 따라 1968년 「학교보건법시행령」, 2002년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학교보건과 신체검사는 2008년 건강검사로 바뀌었고, 2012년부터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보건의 토대가 되는 법률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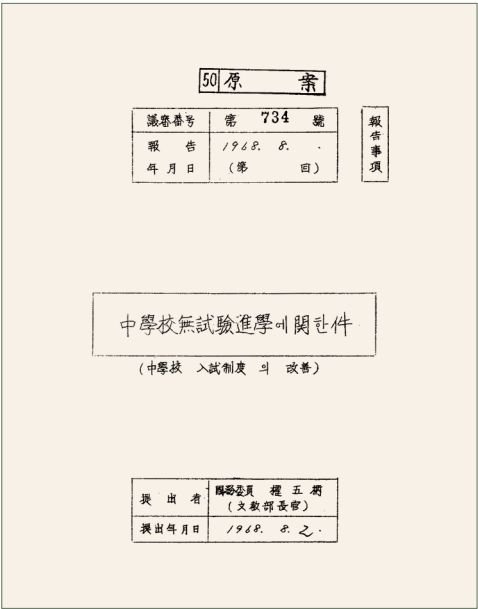
Chapter II

09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관한 건 (중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제59회)

관리번호 : BG0000599
쪽 수 : 20
생산년도 : 1968
생산기관 : 총무처

문교부에서 1968년 8월 2일 작성한 국무회의 안건(심의번호 734호)이다. 이 자료는 문교부의 국무회의 안건 제출문과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관한 건(중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관한 건>은 보고주문, 보고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에 이어 1. 중학교 입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중학교군 무시험진학제도, 3. 실시 계획, 4. 중학교 입학시험제도 폐지에 따르는 일련의 조치지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관한 건> 표지 (BG0000599, 406쪽)

1960년대에 중학교 입시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소위 ‘무집 파동’이 일어났다. 서울시 전기 중학 입학시험에 출제된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한 학생들이 경기중학교에 입학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의무교육 완전취학과 상급학교 진학을 상승, 그리고 명문학교에 대한 희구가 중학교 입시제도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였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에 관한 건>의 보고이유는 종래 초등학교 교육이 중학교 입시준비에 치중되었던 관계로 아동들은 과외공부에 시달려 신체의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형의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의 부재상태를 빚어냈고 인격형성과 기초교육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였으므로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한다고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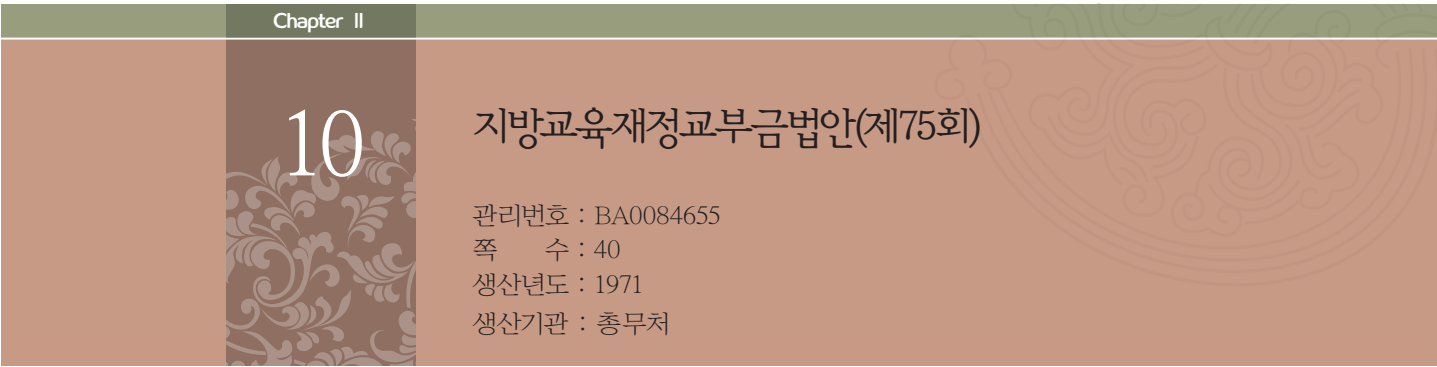
했다. 그리고 무시험진학제도를 1969학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서울특별시, 1970학년도에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시에, 1971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중학교입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입시교육의 현황은 입시 준비교육이 치열하여 일류중학교 입학의 목적으로 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로 일류 중학교에 집중되며, 진학수업의 형식화, 학교차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키와 체중 등 학생 체위가 저하되고, 과외공부 비용 등 학부형 부담이 과중되며, 국민학교 교육의 비정상화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학생 1인당 과외공부비용은 서울의 경우 집단과외 월 18,000~3,000원(평균 8,000원), 개인과외 월 45,000~10,000원(평균 18,000원), 부교재대금 1인당 10,000원(서울 6학년)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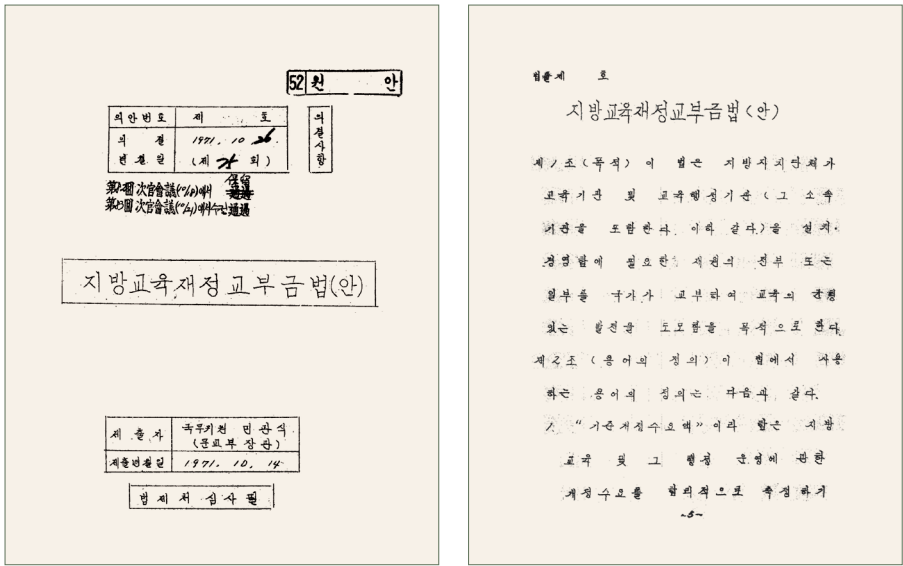
이에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를 실시하고 일류중학교를 연차적으로 고등학교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장점은 국민학교 교육 정상화, 과외공부 해소, 학교차 감소, 통학의 편의 제공, 입시경쟁의 시점이 고등학교로 연장되며, 단점은 지방출신의 도시진학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1969년에 14개 중학교, 1970년에 9개 중학교, 1971년에 4개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개편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실시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역을 남녀별로 각 4개의 중학교군을 설정하고, 중학교군 내의 초등학교 졸업자 중 중학교진학희망자는 무시험으로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조치사항에는 서울시내 중학교 지원자 수용능력 대비표, 서울 중학교 확충계획, 서울 공립중학교 신설(안) 등이 포함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는 ‘일류’ 학교에 대한 교육열과 과외교육 심화에 대한 조치의 성격이었고, 상급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1969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는 초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및 중학교 서열화 해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입시 경쟁의 시점이 고등학교로 연장된 것이었고,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 진학에서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 10월 14일 문교부 장관이 법안을 제출하고 10월 26일에 의결되어 12월 28일에 공포되었다. 법률 제2330호로 제정되어, 197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법제처장이 총무처장관에게 발송하는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문(1971년 10월 14일), 법안(1971년 10월 26일 의결), 관계법령(「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세법」)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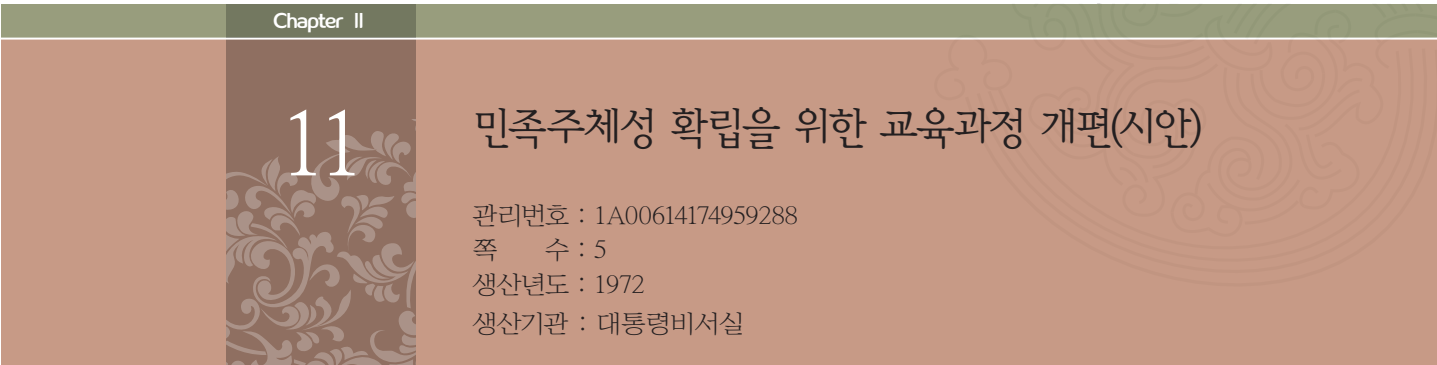
【그림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표지 및 내용 (BA0084655, 495쪽, 499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1년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하면서 교부금제도의 일원화를 가져오고 신축성 있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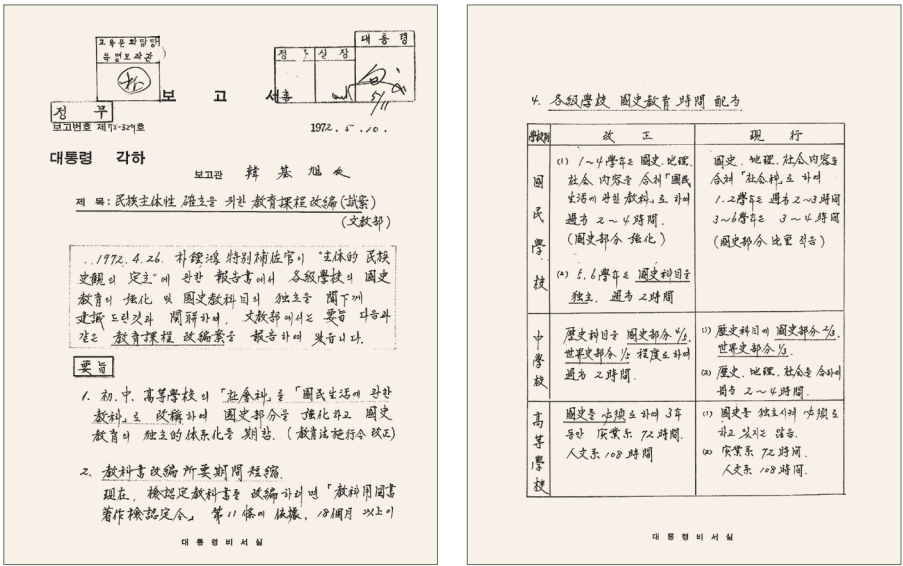
법률의 제안 이유는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함으로써 희망자 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앞으로 의무교육연한을 중학교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으므로 중등교육 재정수요와 의무교육정상화를 위한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집행을 기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 및 규모와 그 교부범위를 정함, ②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되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경비와 기타 경비로 나누어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하도록 함, ③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④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금법을 폐지함 등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8.3 조치에 의해 법정교부율 12.98%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교부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1981년 말 「교육세법」의 제정과 198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의해 교육세 수입액이 교부금에 포함됨에 따라 교부금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지방교육양여금과 통합되고 2010년에는 새로운 기준재정수요액 소요경비 산정에 의한 총액배분 방식 도입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현재까지도 교육재정배분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교부금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원의 불균형과 자치단체 상호 간의 수평적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1972년 5월 10일에 작성된 대통령비서실의 보고서로 제목은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시안)〉이다. 1971년부터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교부가 작성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보고한 자료로, 이후 1973년 2월에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개정·공포된 것을 시작으로 1974년까지 3차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그림 11】〈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표지 및 내용 (1A00614174959288, 36,246쪽, 36,248쪽)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1969년에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되면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체성, 민족주체의식, 민족주체사관이 국가교육의 화두로 부상하였다. 보고의 배경에 대하여, 1972년 4월 26일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에 관한 보

고서에서 각급학교의 국사교육의 강화 및 국사교과목의 독립을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문교부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개편(안)을 보고하여 왔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다.

첫째,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를 '국민생활에 관한 교과'로 개칭하여 국사부분을 강화하고 국사교육의 독립적 정체화를 기한다.

둘째, 교과서 개편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검인정교과서를 개편하려면 「교과용 도서 저작권인정령」 제11조에 의거, 18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과서 개편이 필요할 경우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셋째, 교육과정 개편 및 시행 시기는 초등학교는 금년(1972년) 개편 착수, 1~3학년은 내년부터, 4~5학년은 1974년부터 개편하고 교육과정에 의한 신교과서를 사용하고, 중학교는 금년 개편 착수, 내년에 검정 완료, 1974년부터 신교과서를 사용하며, 고등학교는 금년에 우선 긴급히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내년부터 사용한다고 하였다(신편교과서 사용은 1967년부터 예정).

넷째, 각급학교 국사교육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는 5~6학년에 국사과목을 독립하고 주당 2시간 배정, 중학교는 역사과목을 국사부분 5분의 4, 세계사부분 5분의 1로 하여 주당 2시간 배정, 고등학교는 국사를 필수로 하여 3년 동안 실업계 72시간, 인문계 108시간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국사교육 강화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사교육개선위원회(위원 17명)를 설치 운영하며, 5월 10일 제1차 회의를 하였다.

이 보고의 내용은 1973년부터 실시한 3차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되었다. 국사교육의 강화가 가장 뚜렷하여, 중학교에서 국사가 주당 2시간씩 2, 3학년 필수, 고등학교에서 국사가 6단위로 필수과목이 되었다. 반공 및 도덕 영역이 없어지고 도덕이 과목으로 신설되었다. 보고와 다른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의 명칭이 유지되면서, 학년을 통하여 국사교육을 강화하되 체계적인 국사교육은 5, 6학년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 기록물은 민족주체성 교육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한 1970년대 초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Chapter II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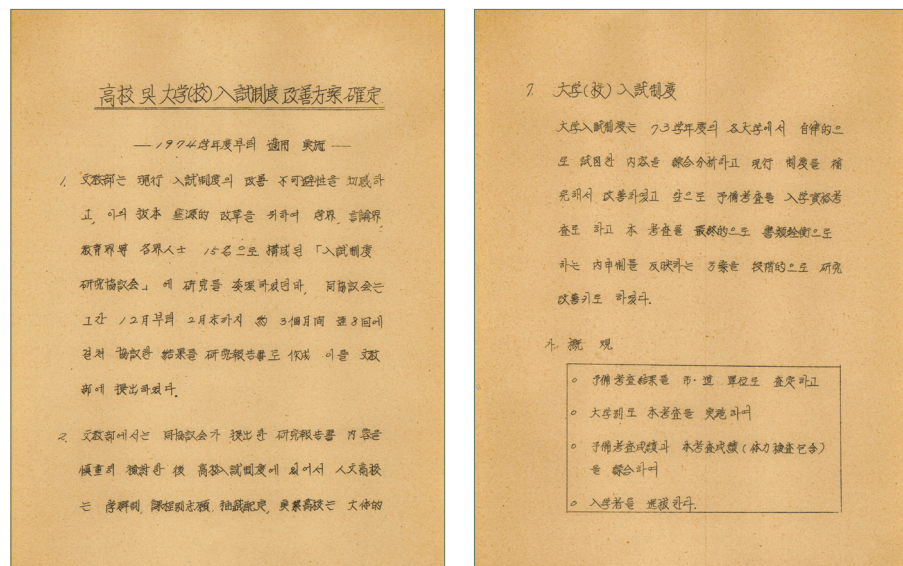
입시제도 개선 최종방안 확정(고교 및 대학)

관리번호 : DA0773727
쪽 수 : 21
생산년도 : 1973
생산기관 : 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국 초중등교육정책과의 입시관계 보존문서 중 하나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문서다. 자료들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고등학교평준화추진상황(1973.8.14)’, 문교부가 작성한 ‘기존입시제도와 개선된 입시제도의 대비(1973.8.2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부산시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고교 신입생 선발고사 시행계획(1974학년도)’, 문교부가 작성한 ‘1974학년도 고교 및 대학입시 내신을 위한 종목별 체력측정요령(1973.7)’, ‘1974학년도 고교 및 대학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 실시요강(1973.7)’, ‘입시제도 2.28 원안과 확정안의 대비(1973.6.28)’, ‘입시제도개선 최종방안 확정(고교 및 대학)(1973.6.28)’, ‘입학제도연구위원회규정(안)(문교부 훈령)(1973.5.14)’, ‘입학제도연구위원회 당면연구 과제(브리핑자료)(1973.5.14)’, ‘고교 및 대학(교) 입시제도 개선방안(1973.2.28)’이다. 이 자료는 일곱 번째 자료로, 보도자료에 해당하는 개괄적인 내용에 이어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 및 대학(교) 입시제도 최종 확정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①고등학교 입시제도, ②대학(교) 입시제도, 입시제도 2.28 원안과 확정안의 대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 분명하게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고교 평준화’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한다. 학군은 공·사립교 포함, 남녀학교별, 학군의 규모는 유사하게 한다. 선발고사는 중학교 3개 학년 전 과정에서 필답고사, 그리고 체력검사로 하며, 시단위 모집정원 선발, 학군별 추첨하여 학교에 배정한다. 실업 및 2부 고등학교,



【그림 12】〈입시제도개선 최종방안 확정〉표지 및 내용 (DA0773727, 230쪽, 241쪽)

고등전문학교의 경우,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선발고사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한다. 특기자 전형은 선발고사 합격자 중 체육특기자만 인정하고, 특수목적고교는 전기에 전국범위 임의 지원, 서울, 부산시에서 선발고사 응시, 학교별 선발로 한다. 적용연도는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점차 기타 도로 확대 실시한다.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예비고사 결과를 시·도 단위로 사정하고, 대학별로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며, 단 예비고사 성적의 반영을 권장한다고 원칙을 밝히고 있다. 시·도 단위 대학 입학 예비고사는 시·도 단위 사정제로, 복수 지원, 지원자가 희망하는 시·도에서 예비고사 응시, 시·도단위 소재대학 모집정원의 200% 선발이 주된 내용이다. 대학별 본고사는 예비고사에 지원하여 합격한 시·도 내 소재 대학에 임의 지원, 대학별 실시, 선발 기준은 예비고사 성적(권장), 내신성적(권장), 본고사 성적, 신체검사, 면접 등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종합 전형하고 1974년부터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마지막에 2.28 원안과의 비교가 수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해 2월 28일에 교육부가 작성한 ‘고교 및 대학(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의 수정, 확

정안이다. 고교와 대학이 함께 다루어졌으나 고교 입시제도의 개선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인문 고등학교를 학교별 지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지역 단위 선발고사에 의한 선발 및 고교 추천 배정으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교 평준화 제도를 의미하며, 그 시작을 확정한 방안이다.

대학 입시의 경우는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별 본고사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그 성적을 각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교와 대학 입시의 개선(안)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입시제도연구협의회에서 1972년 12월부터 2월까지 협의한 결과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와 함께 철회있는 입시관계 문서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새로운 고입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자료들이다.

1973년에 확정되어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와 과열과외 감소 및 고등학교 서열화 해소에 기여하였다. 이후 평준화 확대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평준화가 적용되지 않는 인문 고교도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치열한 고교 입시는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고교 평준화는 중학교무시험에 이어 가장 중요한 입시제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고등학교 전형 방식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업고등학교 중점육성계획 보고

관리번호 : 1A00614174959374

쪽 수 : 3

생산년도 : 1975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1975년 5월 26일에 작성된 대통령 비서실의 보고서로 제목은 〈공업고등학교 중점육성 계획 보고(문교부)〉이다. 문교부가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보고한 내용이다.

보 고 서

보고번호	제 목	장 회 제 호	수석비서관	비 서 실 장	대 통 령
실	정	2			
기안일자	1975. 5. 26				

대통령 각하

보고관

제 목 : 工業高等學校 重點育成計劃報告(文教科)

1. 關於今年度 地方年度巡視時, 市道別로 工業系 高等學校 1~2個校를 建設, 重點 育成을 指示하신 바에 따라 文教科는 迅速히 이에 對策學校를 選定하고 이에 따른 年度別 投資計劃을 樹立, 報告하여 왔습니다.

2. 文教科는 迅速히 이에 精銳加工系養成에 着眼한 重點 育成 精銳加工系養成學校 (機械系, 金屬系 6個校) 외에 造船系 學校가 指定되어 있지 않은 道에 1個校씩 4 5個校로 精銳加工系養成學校를 追加 指定하여 分野別로는 技術人力 養成狀況에 따라 機械系 造船系, 電氣系 造船系 1個校로 重點 育成을 決定합니다.

대통령비서실

對象學校

道別	能 力 校	追 加 指 定	
		校 名	附屬設備(附設校)
京 畿	京城機械工業(公)		
全 北	全北機械工業(公)		
全 南	全南機械工業(公)		
廣 北	金寧工業學校(私)	金寧電氣工業(公)	金寧造船工業(公)
廣 南	金寧工業學校(私)	金寧電氣工業(公)	金寧造船工業(公)
合 計	6個校	5個校(總11個校)	

註: ① 京畿로 精銳加工系養成學校, 金屬系學校는 私立이므로 公立인 金寧電氣工業을 追加 指定함.

② 廣南 昌寧機械工業은 尙缺 技術人力 供給을 爲하여 精銳加工系養成學校에 指定된 必要할것으로 展望되나 1975年 7月後 規模의 工業 新設에 對 32 億 원의 所費의 5% 精銳 入件費를 共同投資하여 指定함.

대통령비서실

【그림 13】〈공업고등학교 중점육성계획 보고〉표지 및 내용(1A00614174959374, 36,766쪽, 36,767쪽)

1970년대 들어 정부가 중화학 공업과 기계 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 기술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집중 육성을 위해 1973년부터 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공업고등학교 시범교육 육성에 필요한 실험실습비, 시설비 등을 집중 지원하였다. 1974년에는 공업고등학교와 공업계 전문학교의 특성화방

안을 마련하여 1978년까지 전국의 64개 공고와 15개 공업전문학교를 기계·전자·조선·화학 등 분야별 특수 공고나 전문학교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기계과 중심의 특성화를 위해 일부 학교를 기계공고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는 대통령이 1975년도 지방연두순회에서 시·도별로 실업계 고등학교 1~2개교를 선정, 중점 육성토록 지시한 바에 따라 문교부가 다음과 같이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왔다고 서두에 밝히고 있다.

문교부는 정밀가공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 정밀가공사 양성학교(성동공고, 부산기계공고 등 6개교) 외에 학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에 1개교씩 모두 5개교의 정밀가공사 양성학교를 추가 지정하되 분야별로는 기술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기계과 중심 4개교, 전자과 중심 1개교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기 지정된 성동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 충남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전남기계공고, 금오공업학교를 제외하고, 경기도 인천공고, 강원도 태백공고, 충북에 청주공고, 경북에 구미전자공고(전자과), 경남에 울산공고 등 5개교를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연도별 시설확장 투자계획을 1976년부터 3년 간 제시하였다.

이 기록물은 1970년대 공업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육성·지원정책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점 육성된 학교들이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공업고등학교로 성장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알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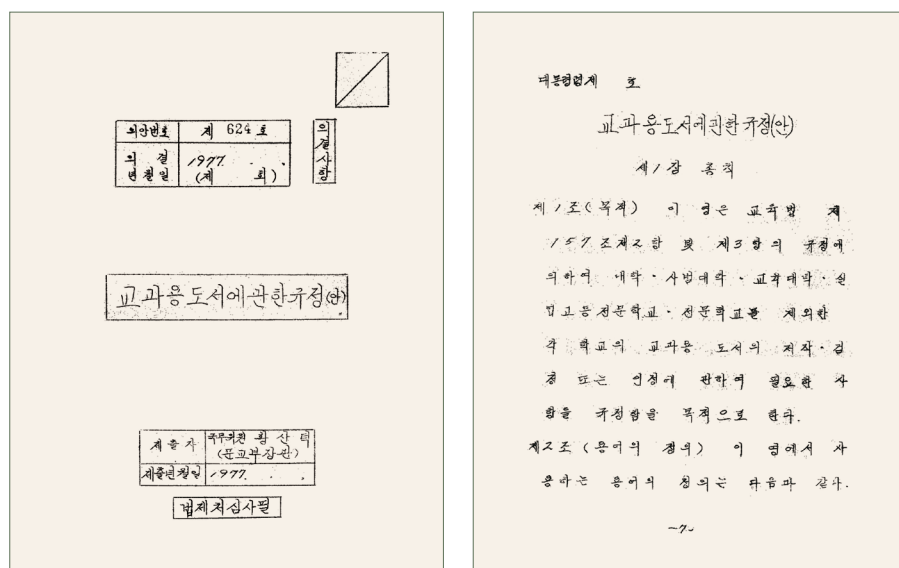
관리번호 : BA0084831

쪽 수 : 59

생산년도 : 1977

생산기관 : 총무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8660호로 1977년 8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 공포되었다. 이 자료는 1977년 8월 4일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 법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안)〉표지 및 내용 (BA0084831, 587쪽, 594쪽)

「교과용도서에 대한 규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국정교과용도서 편찬규정」(대통령령 제337호)과 1950년에 제정된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대통령령 제336호)이 1973년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대통령령 제5252호)으로 통합되었고, 이 법령을 폐지하면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규정의 제안 이유는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교과용도서 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임”고 밝혔다.

규정은 9장(총칙,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수정 및 개편, 발행, 가격 결정, 감독, 권한의 위임, 보칙) 전문 5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1조에서 「교육법」 제1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 또는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로 한정하고, 교과서 및 지도서를 각각 1종(국정도서) 및 2종(검정도서)으로 구분함, ②1종교과서 및 1종지도서의 범위를 정함, ③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1종교과서 및 1종지도서의 편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내용심사를 하기 위하여 1종도서 편찬심의회를 둔, ④2종교과서 및 2종지도서의 범위를 정함, ⑤2종교과서 및 2종지도서의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가 하도록 함, ⑥2종교과서 및 2종지도서의 검정합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사용학년도로부터 5년 간으로 함, ⑦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및 사용승인 절차를 정함, ⑧교과서 및 지도서의 수정은 3년마다 하고, 그 기간 내에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 장관이 수정 자료를 학교장에게 배포하게 함, ⑨문교부 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을 공급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⑩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 사정에 있어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등 원가요소별에 의하도록 함 등이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재의 편찬·발행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되었고, 매체의 유형을 도서에서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로 확장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유도하는 장치가 되었다.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는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용어의 개념, 저작, 편찬, 검인정, 발행,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왔고, 미래사회의 대응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편찬을 지향하여 개정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제9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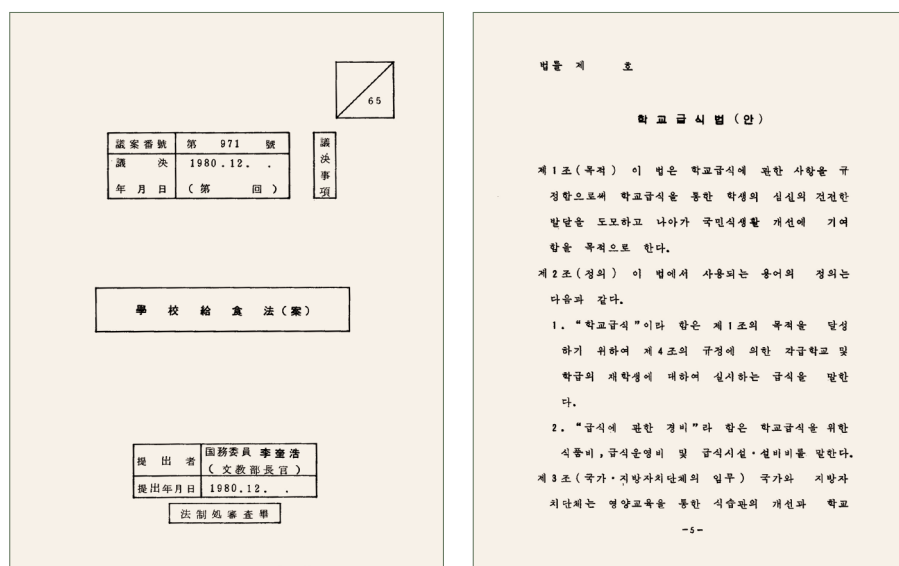
관리번호 : BA0084944

쪽 수 : 15

생산년도 : 1980

생산기관 : 총무처

「학교급식법」은 법률 제3356호로 1981년 1월 29일 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1981년 1월 20일 국가보위입법회의로부터 이송된 법률을 1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고자 결재를 요청하는 글, 법률,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 참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5】〈학교급식법〉표지 및 내용 (BA0084944, 170쪽, 174쪽)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1980년대 복지국가건설에 발맞추어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을 종래의 구호적 급식에서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식생활개

선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혔고, 제2조에서 학교급식은 각급학교 또는 학급의 재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통한 식습관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②학교급식의 대상을 국민학교·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기타 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함, ③학교급식 실시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도록 함, ④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시설·설비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에서 작물재배, 동물사육 등 각종 생산활동에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 매각대금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학교급식법」의 제정에 따라 1981년 「학교급식법법시행령」, 1993년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학교급식법」은 2006년 7월 19일 전문개정되어,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영양교육과 영양상담 등 교육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운영 체계와 방식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토대가 되는 법률로 유지되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제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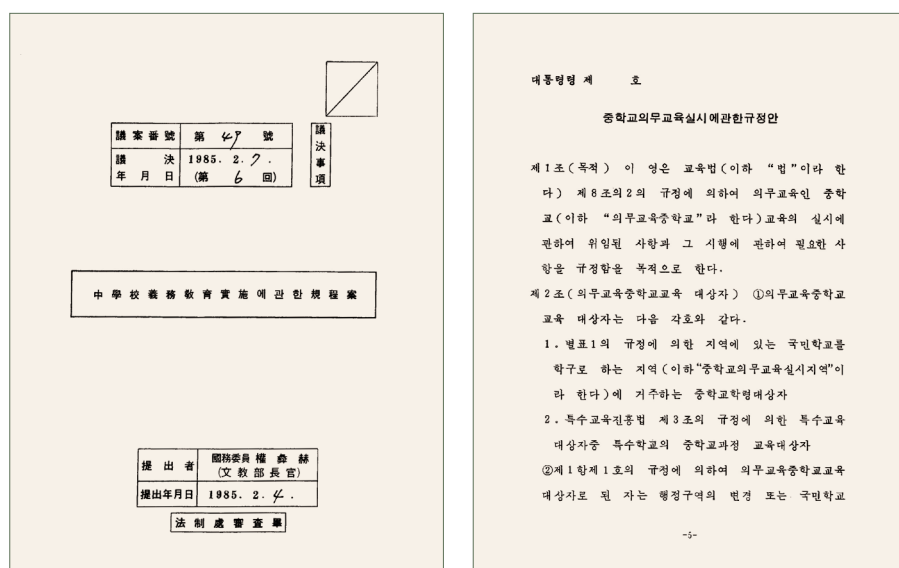
관리번호 : BA0085059

쪽 수 : 71

생산년도 : 1985

생산기관 : 총무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 11626호로 1985년 2월 21일에 제정되고 1985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1985. 2. 4), 국무회의 의안처리전(2.5 차관회의 심의, 2.7 국무회의 심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으로 구성되었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1998년 2월 24일 폐지되었다.



【그림 16】〈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표지 및 내용 (BA0085059, 16쪽, 20쪽)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은 1984년 8월 2일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실시하기로 한 규정이다.

제정 이유는 “교육법이 개정되어 1985학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무교육인 중학교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규정은 전문 6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영은 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밝혔고, 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와 특수학교의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중학교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1985학년도부터 우선 실시되는 중학교의무교육의 대상자를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국민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아동과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의 중학교과정교육대상자로 함, ②의무교육인 중학교교육대상자의 중학교배정원서는 그 출신학교의 장이 출신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회(중학구의 경우에는 관할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교육인 중학교교육대상자의 중학교입학방법과 절차, 전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취학의무의 유예 및 독려 등 의무교육인 중학교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전 학년에 적용되었다. 또 1992년 이 규정의 개정으로 1992~1994년에 읍·면지역 전 학년까지 혜택이 돌아갔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다. 이후 전국적 시행이 미루어져오다가 2001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확대가 결정되었다.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규정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교육공무원법 위헌결정 관련 교사신규임용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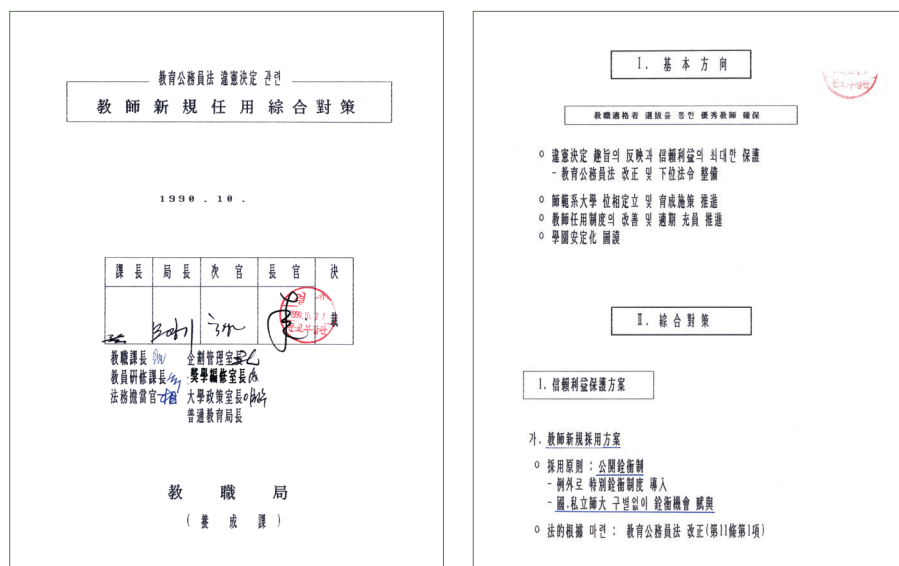
관리번호 : DA0773905

쪽 수 : 40

생산년도 : 1990

생산기관 : 문교부

1990년 10월 문교부 교직국 양성과에서 작성한 문서로 제목은 <교육공무원법 위헌 결정 관련 교사신규임용 종합대책>이다. 목차는 기본방향, 종합대책, 행정조치 계획,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7】<교육공무원법 위헌결정 관련 교사신규임용 종합대책> 표지 및 내용(DA0773905, 166쪽, 170쪽)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었고,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임용은 국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의 의무임용이 원칙이었다. 국립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은 수업료가 면제되었고 졸업 후 3년 이상 복무 의무가 있었다. 위헌판결과 함께 기존의 방식은 폐지되고, 1991학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로 교사를 선발하여야 했다.

이 자료는 위헌판결 직후 작성된 종합대책으로, 기본 방향은 ‘교직적격자 선발을 통한 우수교사 확보’로 제시되었다. 위헌판정 취지의 반영과 신뢰이익의 최대한 확보, 사범계대학 위상 정립 및 육성시책 추진, 교사임용제도의 개선 및 적기 충원 추진, 학원 안정화 도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교사신규채용은 공개전형제로 국·사립사대 구별 없이 전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신뢰이익 확보방안으로는 양성기관별로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마련, 특별정원을 통한 임용규모 확대가 제시되었다.

공개전형은 필기시험(교육학, 전공), 논술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해당과목)로 구성하고, 제1차 전형은 필기와 실기 시험, 제2차 전형은 논술과 면접, 기타 가산점으로 하였다.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여 복수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이수자, 해당 시·도 사범계대학 출신자 등 임용권자가 선택적,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1991학년도 교사신규채용 계획을 마련하고, 국립사범계대학 출신자를 70% 이상 선발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사범계대학 육성시책으로는 교원양성기관 정원정책 재검토, 사범계대학 기능 재정립, 사범계대학 출신자 우대, 국립사대 우대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학원대책으로는 대학별 학생지도 전담반을 구성하여 학원소요 종료시까지 운영하여 헌법 결정취지 존중, 공개전형 당위성 홍보, 신뢰이익보호 경과조치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설득하고, 국립사대, 교대 교수에게 장관 서한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사립사대측에 대해서는 1994년부터 완전공개경쟁 도입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등이다.

행정조치계획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 행정조치 및 전형제도 개선, 1991년 교육공무원 신규채용계획 수립, 중등교원 특별충원 요구, 국립사범계대학 육성시책 구체적 방안 검토 등을 밝혔다.

1990년의 위헌결정으로 1991년부터 교원임용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의 방식이 교사의 사명감을 키우는데 유리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교직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월등하게 많은 상황에서 공개전형제도가 공정한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후로도 교직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전형 방식에 대한 개선·보완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교육양여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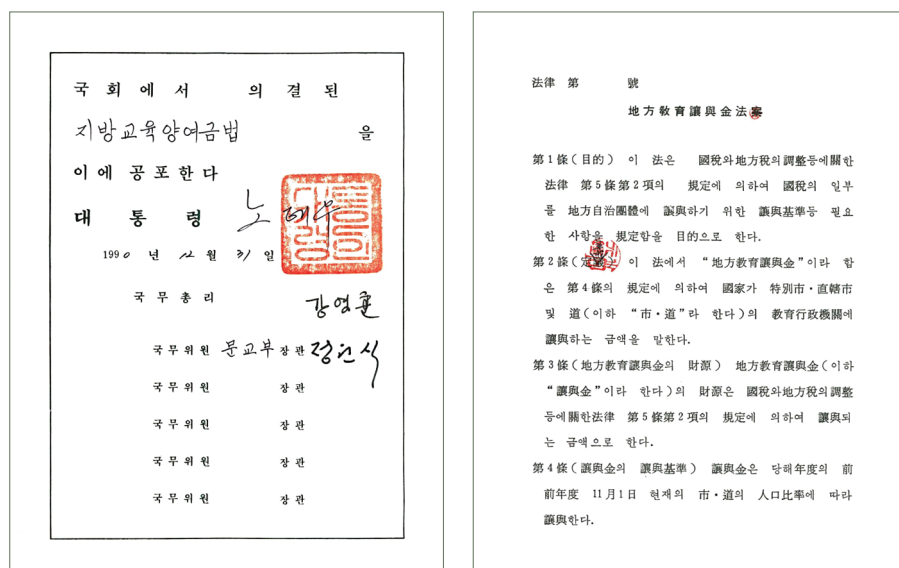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4615044

쪽 수 : 20

생산년도 : 1990

생산기관 : 법제처

「지방교육양여금법」은 1990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2월 22일 이승
 되어 12월 2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4301호로 199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공포한다는 글, 공포 결재 기안용지, 법률, 참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률은 지방교육양여금이 지방교육교부금으로 통합되면서
 2004년에 폐지되었다.



【그림 18】〈지방교육양여금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4615044, 16,385쪽, 16,388쪽)

「지방교육양여금법」은 1990년 「교육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세 전액이 지방교육
 양여금으로 시도에 지원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교육자치라는 교육여
 건 변화를 수용하고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

인데, 정부가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운영하지 않고 양여금 세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된 관계로 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정력 격차가 유발되기 때문이
 다. 즉, 세원이 편재되어 있는 교육세를 양여세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교육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제정 이유로 “국세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교육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
 은 전문 7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양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밝혔고, 제2조
 에서 지방교육양여금은 국가가 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는 금액으
 로 정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되는 교육세 수입의 전액으로 함, ②지방교육양여
 금은 당해 연도의 전전 연도 11월 1일 현재의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인구비율에 따
 라 양여하도록 함, ③양여금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등의 시설 및 교직원 등의 인건
 비 등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함, ④교육부 장관은 착오 등으
 로 인하여 잘못 양여한 금액은 이를 다음 회의 양여금 양여 시에 증감하여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의 도입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원은 교부금제도와 함께 이원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양여금이 학생수나 교원수 등에 의하지 않고 시도별
 인구비율에 의하여 배분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형평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양여
 금을 교부금법 상의 기준재정수입액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교부금과의 통합운영이 불
 가피하여 양여금의 배분 목적을 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형식상으로는 교부
 금과 양여금제도로 이원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나 양여금이 교부금 속으로 통합되기 때
 문에 실제로는 교부금제도에 의한 지방교육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교
 육양여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으로 추가되자 이 법률은
 2004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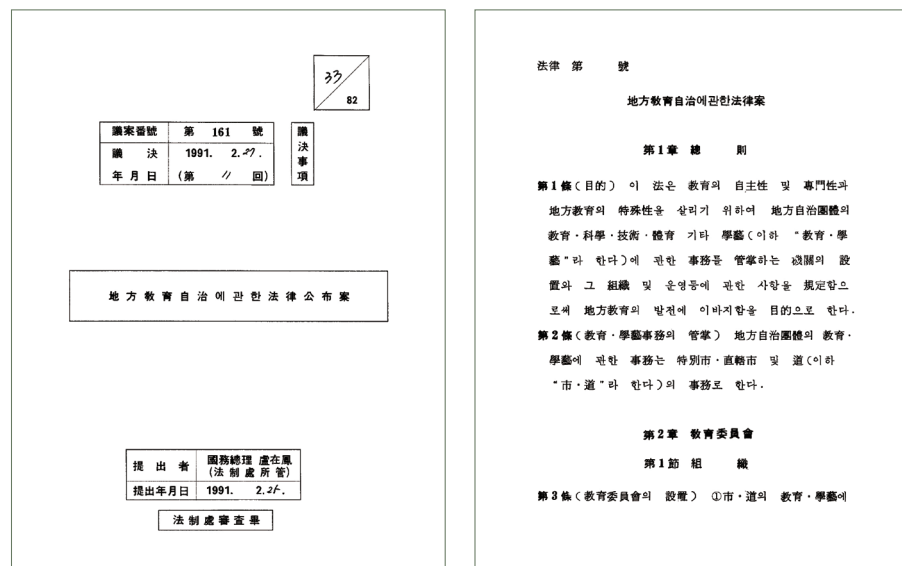
관리번호 : BA0000034

쪽 수 : 40

생산년도 : 1991

생산기관 : 총무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1991년 2월 25일 국무회의에 부의되고 1991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률 제4347호로 3월 8일 제정되었으며, 1991년 6월 20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문, 법률공포안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표지 및 내용 (BA0000034, 147쪽, 150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법」에 근거했던 지방교육자치의 근거 조항을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 3, 4공화국 시대 명목상의 교육자치를 끝내고 실질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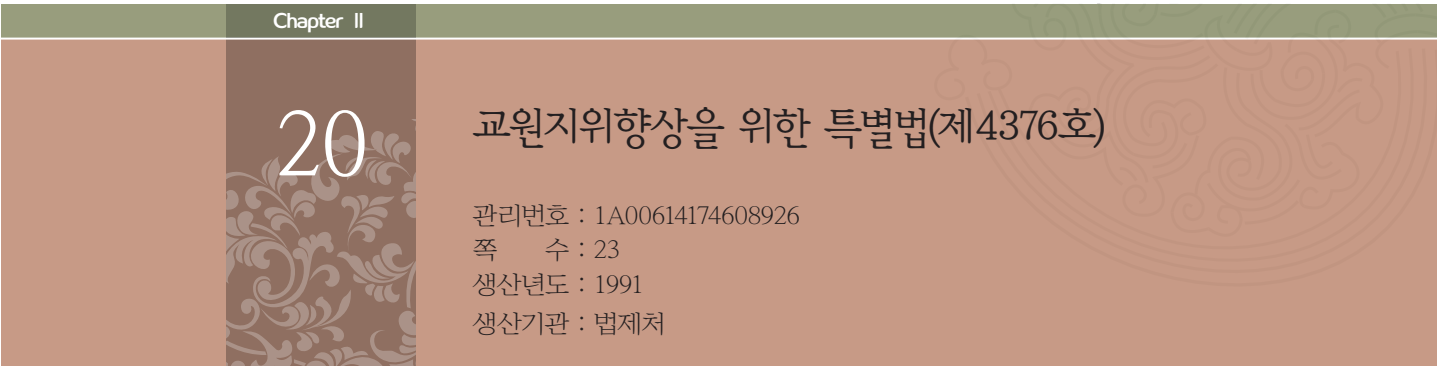
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5장(총칙,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재정, 지도와 감독) 전문 52개 조항, 부칙 11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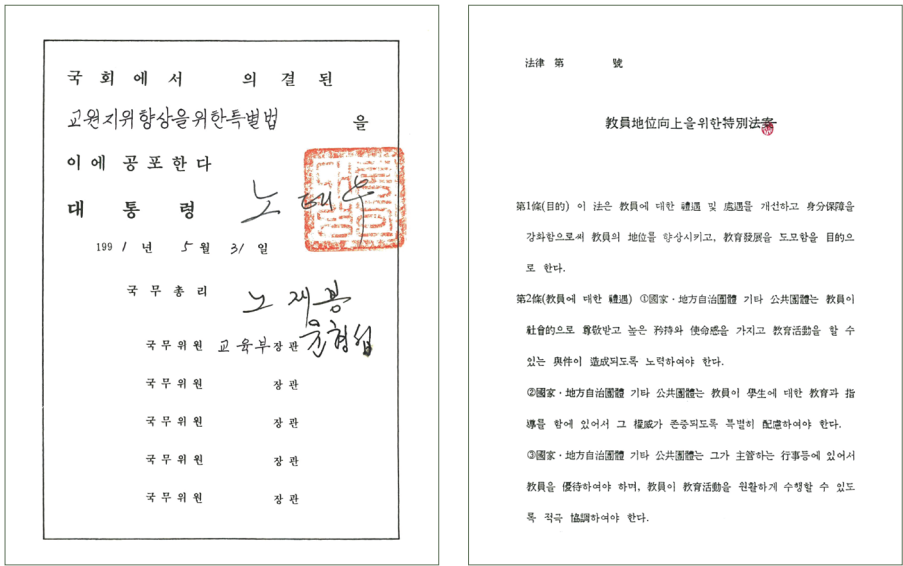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 함, ②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둠, ③교육위원회의 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 수 또는 교육청 수와 같게 함, ④교육위원은 4년 임기로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함, ⑤교육위원은 명예직으로 그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5년 이상 또는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로 함, ⑥교육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대학과 각종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이에서 제외함, ⑦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되, 교육·학예에 관한 기본재산·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봄, ⑧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하고, 회의일수는 연 4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함, ⑨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고,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함, ⑩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임기 4년의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

출함, ⑪교육감의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 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 있는 자로 함, ⑫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⑬부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⑭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관장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명목상의 교육자치시대에서 벗어나고, 1949년 「교육법」에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지키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전에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설정함으로써, 추후 교육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고 결국 교육위원회 폐지의 단초가 되었다.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육감 선출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간선제 및 주민직선제 도입, 교육의원제 도입 및 폐지, 교육감협의체와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제도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1991년 5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5월 16일 정부로 이송되어 5월 23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4376호로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공포한다는 글, 공포 결재 기안용지, 법률,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0】〈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4608926, 20,472쪽, 20,4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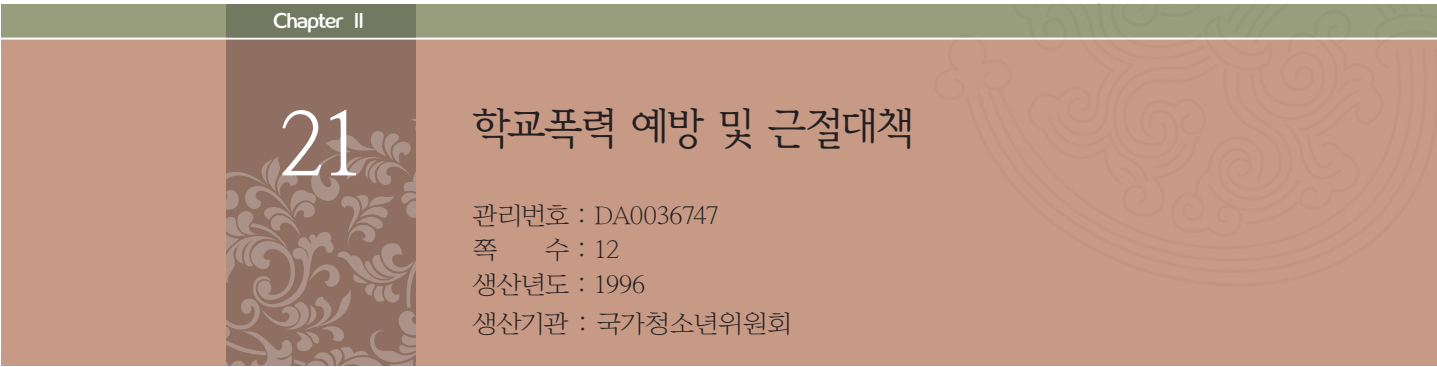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육회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13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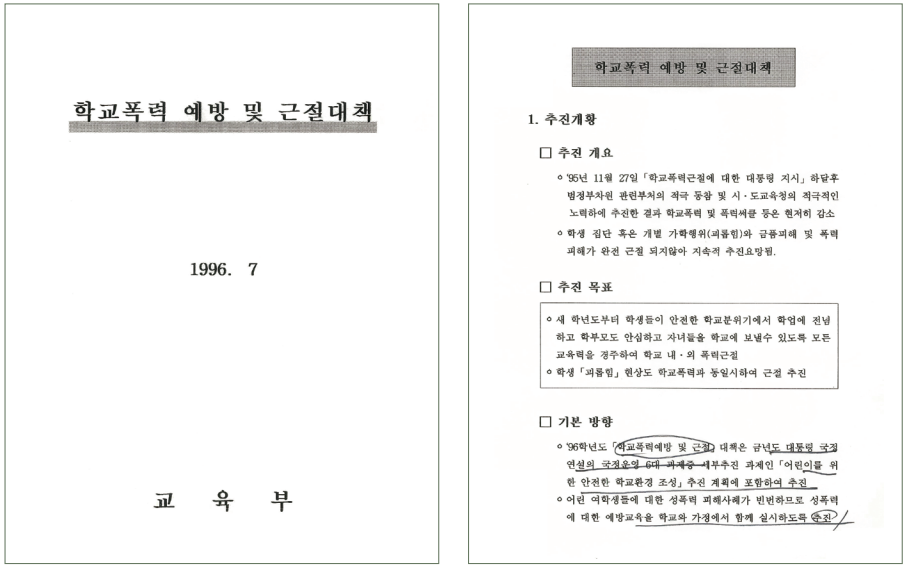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①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협조함, ②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도 이에 준하는 보수수준을 유지함, ③교원은 현행법인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학교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함, ⑤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⑥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징계처분 등을 한 처분행정청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를 기속함, ⑦교육회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 교섭·협의하도록 하고 교섭·협의사항에 대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설치함 등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과 교섭,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에 관한 규정」, 2000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현재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2016년 2월 3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였다. 그 이유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밝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권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교육부에서 1996년 7월 작성한 문서로 제목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이다. 1995년 11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추진 개황, 추진 실적, '96 학교폭력근절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표지 및 내용 (DA0036747, 193쪽, 1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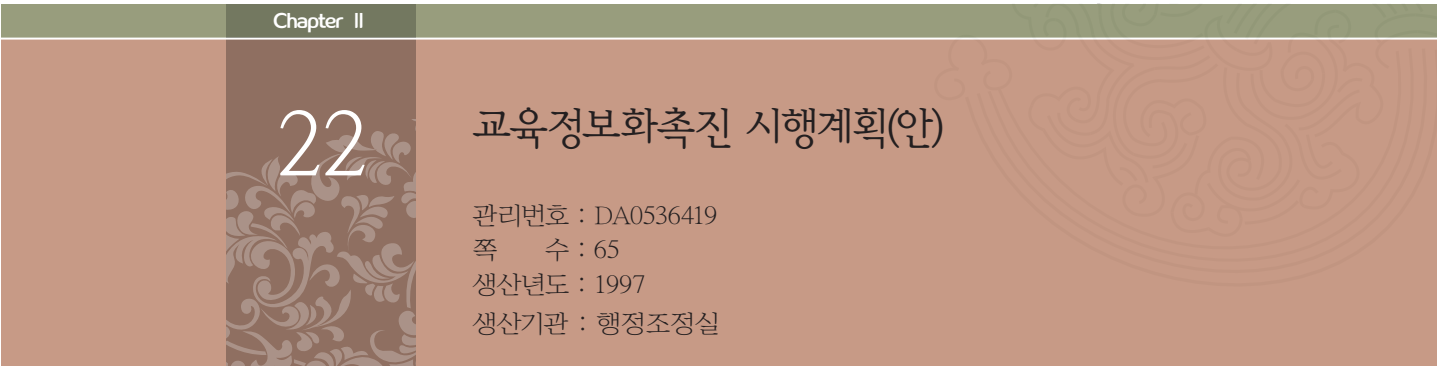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였으나, 학교폭력이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1월 27일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부터로 볼 수 있다.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추진되었고, 이 자료는 최초의 교육부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추진 개황을 살펴보면, 1995년 11월 대통령 지시 하달 후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의 노력 하에 학교폭력과 폭력씨클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학생 집단 혹은 개별 가학 행위(괴롭힘)와 금품피해 및 폭력피해가 완전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추진이 요망된다. 추진 목표는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분위기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학교 내·외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괴롭힘 현상도 학교폭력과 동일시하여 근절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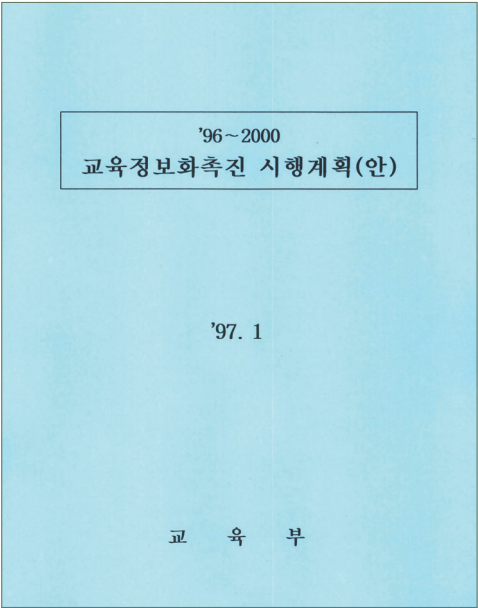
기본 방향은 대통령 국정운영 6대 과제 중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추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추진 실적으로는 학교 내·외 폭력 근절대책 추진 전담 체제 구축, 학교폭력추방대책반 운영상황 점검 및 협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중점감사 실시, 홍보자료, 공익광고, 캠페인 등이 있었다.

1996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지속적,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과 함께 시민단체가 자율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중·장기적으로는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청소년단체의 건전활동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대처 방안 강구, 학교폭력 근절을 생활지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선도대상 학생 학교별 파악 및 지도 강화, ②등·하교길 학생보호 활동 강화, ③실천위주 인성교육 활동지원, ④집단 괴롭힘 및 교내폭력 방지를 위한 순찰 강화, ⑤홍보활동 강화, ⑥중도 탈락생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⑦학생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대책의 수립 이후에도 학교폭력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거의 매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2004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2012년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목에 포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왔다.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에서 생산한 ‘전자상거래 CALS/EC’에 포함된 자료로 1997년 1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안병영(교육부 장관)이 제출한 <교육정보화촉진 시행 계획(안)>이다.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교육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으로 수립된 것이다. 계획의 목적은 1. 추진 개요, 2. 국내·외 교육정보화 추진 동향, 3. 추진목표 및 전략, 4. 기대효과, 5. 교육정보화 추진과제, 6. 소요예산 총괄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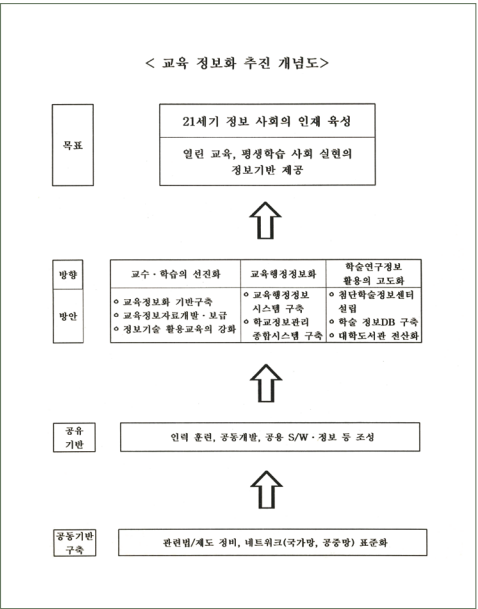


【그림 22】 <교육정보화촉진 시행계획(안)> 표지 (DA0536419, 5쪽)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세계화·정보화가 주요 화두가 되었고, 5.31 교육개혁(안)에서도 정보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교육 분야의 계획으로 이 자료가 발표되었다.

제안 이유는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제안함”으로 밝혔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 목표는 21세기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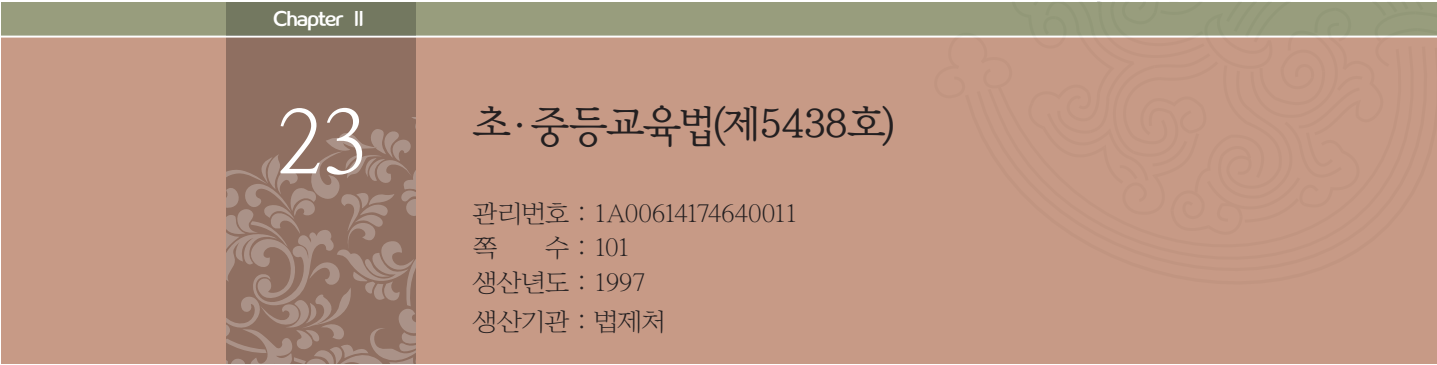


【그림 23】 교육 정보화 추진 개념도 (DA0536419,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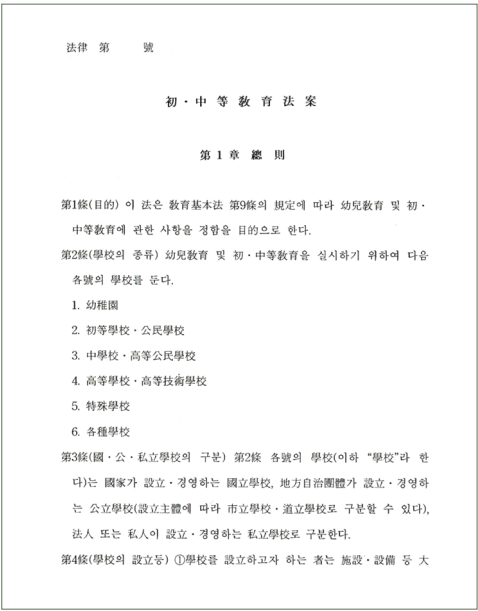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은 1999년까지 초·중등학교에 776,247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전 교원에게 1인당 PC 1대를 보급하며, 2000년까지 교내 전산망을 구축함,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은 한국교육방송원을 설립하고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교수·학습용 SW 및 DB를 개발·보급함, 정보화기술활용교육의 강화는 초·중·고교의 정보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고 정보교육 담당교원을 양성·연수함, 교육행정정보화는 교육행정기관의 전산 전문인력 확충 및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조직 정비, 각종 교육행정 DB 구축, 학사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학술·연구 기반조성은 교육전산망 고속화를, 학술 정보 DB 구축은 첨단학술정보센터 설립·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되는 교육정보화추진 시행계획은 최초의 교육정보화 계획으로 수립되었고, 이후 교육정보화 2단계 종합발전방안(2001~2005년), 교육정보화 3단계 종합발전방안(2006~2010년),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기본계획(2010~2014년), 5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년)로 이어졌다. 첫 출발점이었던 교육정보화추진 시행계획은 기존의 ‘학교 컴퓨터 교육’이 ‘교육정보화’로의 종합적인 비전과 과제를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¹⁾

1) 강명희 외, 『한국의 교육정보화 정책 모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6, 121쪽



「초·중등교육법」은 1997년 11월 2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2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5438호로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었고 1998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공포한다는 글, 공포 결재 기안용지, 법률,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 참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4】 〈초·중등교육법〉표지
(1A00614174640011, 318쪽)

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학교교육에 대한 법률체계 개선과 함께 1995년 5. 31 교육개혁(안)의 입법적 보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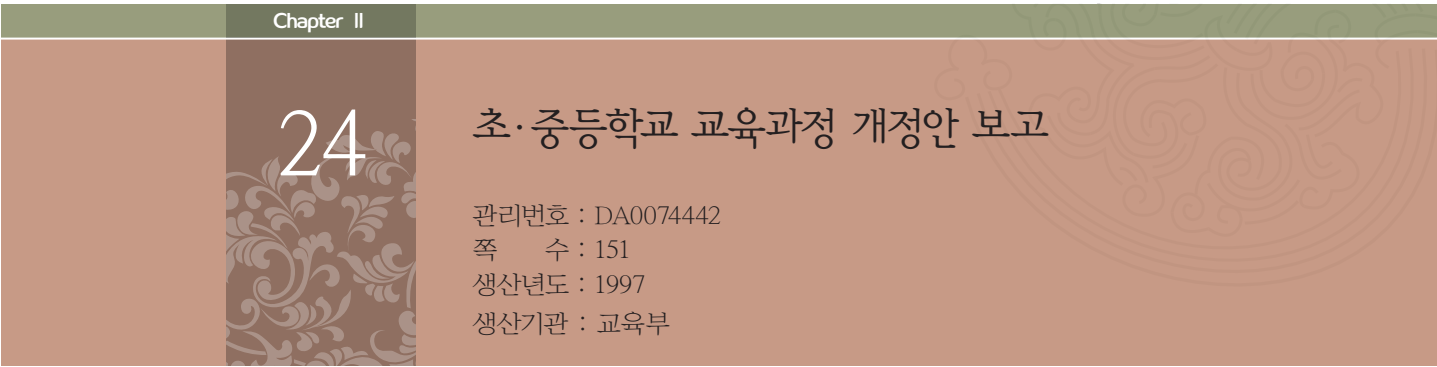
광복 후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교육법」을 폐지하면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근간을 규정한 법률이 「초·중등교육법」이다.

제정 이유는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초·중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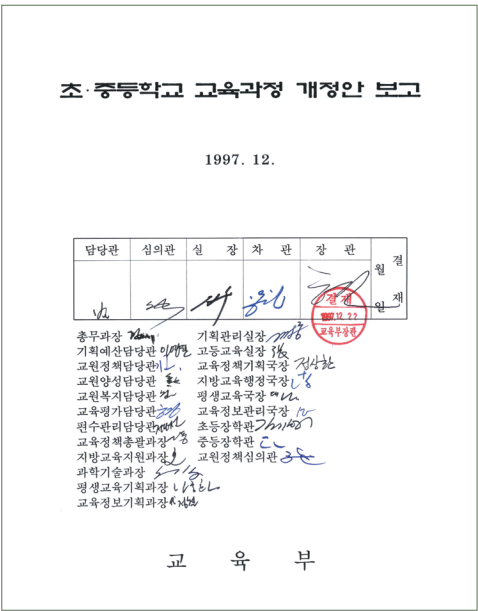
법률은 5장(총칙,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보칙 및 벌칙) 전문 68개 조항과 부칙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는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와 함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③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④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점입교사·명예교사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⑤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및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⑦「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⑧근로청소년 등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⑨교육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관계 법령 중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1997년 12월 제정 당시에는 유아교육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월에 「유아교육법」이 법률 제7120호로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 「초·중등교육법」은 같은 시기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초·중등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위해 1997년 12월 교육부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내용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공포)의 변천, 2.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경과, 3. 개정의 기본 방향 및 중점, 4. 개정의 주요 내용, 5.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5】〈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보고〉 표지 (DA0074442, 1쪽)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공포)는 1954년 1차(교과중심 교육과정), 1963년 2차(경험중심 교육과정), 1973~1974년 3차(학문중심 교육과정), 1981년 4차, 1987~1988년 5차, 1992년 6차가 순차적으로 공포되었다. 1997년에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로 공포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일곱 번째로 개정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제7차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는 개정안의 보고 자료로 1997년 12월 1일자이고, 초·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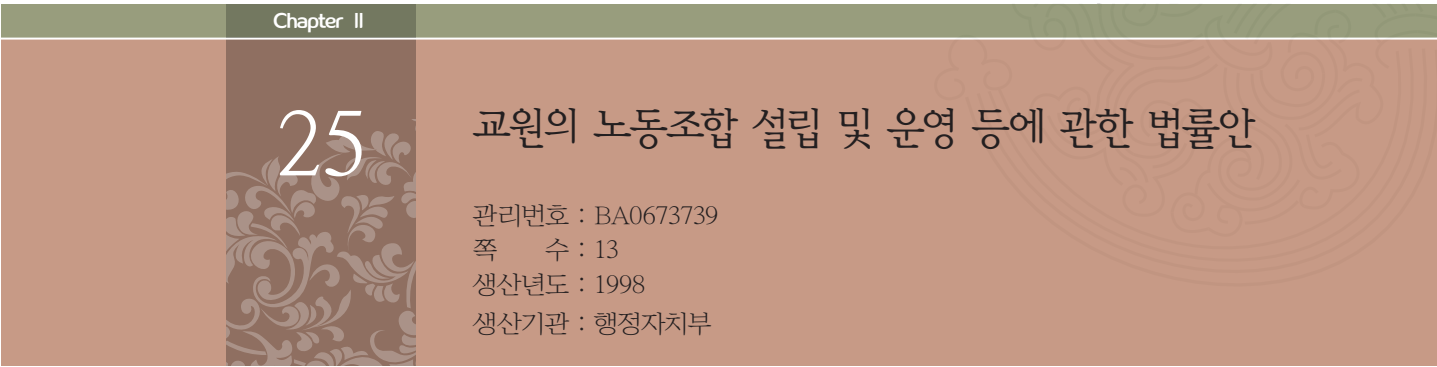
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는 12월 22일로 되어 있어 개정안을 보고한 후 고시가 공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지향하여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목표),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신장(내용),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운영),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제도)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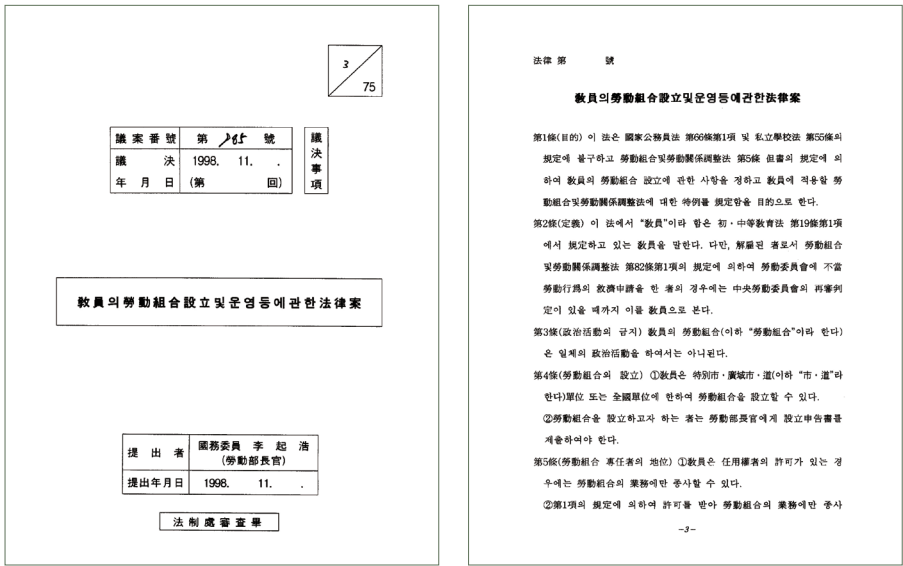
개정의 중심은 ①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②고교 2, 3학년의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③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④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⑤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⑥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⑦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이다.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0년과 선택(심화)중심 교육과정 2년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10개 필수과목을 가르치되 학생별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2, 3학년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79개 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학습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은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26개 일반선택과목과 53개 심화선택과목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초등학교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 중학교는 교과 편제의 조정과 학생·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재량활동의 신설,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능력·흥미·적성·진로를 중시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확립을 개정 중점으로 하였다. 이에 총론과 각론이 개정되었고,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이 제시되었다. 2000년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더 이상 전면적, 일률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차 교육과정’이 아닌, 개정된 연도를 붙여 ‘○○○○ 개정 교육과정’이라 명명되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7차 교육과정은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명칭이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1월 15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월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 제5727호로 1999년 1월 29일 제정되었고 3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자료는 공포한다는 글, 공포 결재 기안용지, 법률, 관보 게재 요청 글, 공포 통지 글,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6】〈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BA0673739, 32쪽, 35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교원노조 운동은 4.19 혁명 직후 움직임이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교사들이 파면·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94년 해직교사가 복직 조치되면

서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존중하여 그 보장범위와 단체교섭의 구조 등을 정하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법률은 전문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목적으로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이 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보장대상이 되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한정함, ②교원은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③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 등의 연합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 ④관계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⑤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등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1997년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이 새롭게 부여되었고, 불법단체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다. 이후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